

2023  
전문예술법인·단체  
경영활성화 지원

# 제도 담당 지자체 공무원 워크숍 자료집

문화체육관광부  
Korea Arts Management Service  
예술경영지원센터

## 2023 전문예술법인·단체 경영 활성화 지원 제도 담당 지자체 공무원 워크숍 자료집

기획·구성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경제본부 인재개발팀

발행일 | 2023년 8월 3일

발행인 | 문영호

발행처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57 (연건동) 홍익대학교 대학로캠퍼스 교육동 3층, 12층

전화 02-708-2267 팩스 02-708-2243

[www.gokams.or.kr](http://www.gokams.or.kr)

디자인인쇄 | 프린팅랩

※ 책자의 판매, 전재, 복사를 금합니다.

# CONTENTS

2023 전문예술법인·단체 경영 활성화 지원  
제도 담당 지자체 공무원 워크숍 자료집

- I. 예술경영지원센터 소개 P.3
  - II. 전문예술법인·단체 경영 활성화 지원 사업 P.5
  - III. 전문예술법인·단체 관련 제도 P.7
    - 1. 제도 도입 배경 P.8
    - 2.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절차 P.10
    - 3.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혜택 P.11
    - 4. 자주 묻는 질문 P.13

붙임 1. 전문예술법인·단체 관련 법령 P.16

붙임 2. 공익법인등(舊지정기부금단체)의 추천신청 안내 P.29
  - IV. 지역별 제도 운영 현황 P.51
  - V. 업무 프로세스별 제도 운영 가이드 P.59
  - VI. 전문예술 법인·단체 제도와 기부금 회계·세무 개요 P.65
    - 전문예술법인·단체 관련 세법 강의안
- 부록.
- 1. 관련 서식 P.92
  - 2. 지자체별 조례 및 시행규칙 P.111

# 1. 예술경영지원센터 소개

2023 전문예술법인·단체 경영 활성화 지원  
 제도 담당 지자체 공무원 워크숍 자료집

<b>설립목적</b>	예술유통의 활성화와 예술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예술현장의 자생력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관 제3조)			
<b>미션</b>	예술산업 생태계 활성화 지원으로 예술현장의 자생력 제고에 기여			
<b>비전</b>	예술산업의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예술경영 전문 기관			
<b>전략목표</b>	예술산업 지속성장 기반 고도화	공연예술 시장 활성화	시각예술 시장 활성화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영인프라 강화
<b>전략과제</b>	▼	▼	▼	▼
	현장맞춤형 인력양성 및 일자리 정보 제공 강화	해외진출 재개 · 촉진	미술시장 정보의 활용성 · 투명성 제고	효율적 · 생산적 경영시스템 운영
	예술기업 성장 단계별 지원 강화	상생 · 협력 유통방식 도입	미술시장 유통 · 소비 활성화	전문성 제고를 위한 조직문화 조성
예술산업 종합지원 플랫폼 아트코리아랩 조성	정보 · 데이터 활용도 제고	시각예술 해외진출 지원 강화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제도 개선	
<b>핵심가치</b>	전문성	소통 · 협력	공정 · 투명	

---

## II. 전문예술법인·단체 경영 활성화 지원 사업

---

2023 전문예술법인·단체 경영 활성화 지원  
제도 담당 지자체 공무원 워크숍 자료집

### 1. 사업 추진 배경 및 목적

전문예술법인·단체 경영 활성화 지원 사업은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제도 운영 지원과 지정단체 경영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전문예술법인·단체의 기본 정보 및 활동 내용을 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제공함으로써 예술경영 관련 정보의 활용 확대를 도모하고자 한다.

### 2. 2023년 세부 사업계획

- 예술경영컨설팅(온라인) 운영

분야별 전문 컨설턴트 위촉으로 신속, 정확한 실시간 경영 자문 제공

- 제도 안내 자료집 제작 및 배포

전문예술법인·단체 관련 변경 제도, 현황 및 현안이 수록된 자료집 제작  
제도 담당 공무원 및 전문예술법인·단체 대상 안내 추진

- 전문예술법인·단체 운영 실적 조사 및 백서 발간

전문예술법인·단체 운영 현황 조사 및 통계 분석  
제도 관련 정보 및 지정 현황, 통계 분석 자료를 제공하여 제도 운영 및 활성화 지원

- 예술경영 우수사례 공모 및 예술경영대상 개최

전문예술법인·단체 및 예술기업, 예술경영인 대상  
사업기획 및 수행, 조직 운영, 자원 조성 등에 대한 우수 사례 발굴 및 공유

### Ⅲ. 전문예술법인·단체 관련 제도

2023 전문예술법인·단체 경영 활성화 지원  
제도 담당 지자체 공무원 워크숍 자료집

## 1. 제도 도입 배경

### 1) 제도 도입 배경 및 근거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제도는 2000년에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으로 제10조(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육성)가 제정되면서 시행되었다.

대부분의 주요 공연예술단체들이 법인격이 없는 임의단체나 비영리법인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단체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추는 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민간의 경우 법인격이나 단체의 성격에 관계없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가 단체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세제혜택 등 제도적 지원 장치를 마련하고 국·공립예술단체의 경우 시장원리와 공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운영모델을 제시하려는 취지로 본 제도가 도입되었다.

「2001년 공연예술진흥 기본계획」에서는 전문예술법인·단체 제도의 도입 배경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첫째, 국·공립 예술단체의 경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함으로써 자율성 침해 논란과 방만한 운영으로 인한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대두되었다. 또한 국·공립예술단체의 공공성 유지와 예술단체 본래의 기능을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국·공립예술단체들을 무조건 축소 또는 민영화하기보다는 새로운 운영방식의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가격기능과 경쟁이라는 시장원리의 도입을 통한 공공부문 서비스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정부 및 지자체가 담당해온 기능들을 민간화 또는 민간과 협력하여 위촉되었던 민간예술단체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둘째, 민간직업예술단체의 경우 공연예술단체의 수는 많으나 수준 있는 작품의 상시 공연체계를 갖춘 전문직업예술단체는 부족한 현실에서 체계적인 공연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 단체를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하여 집중 육성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국·공립공연장이 민간직업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상주단체 계약을 통해 국·공립 공연장은 전속단체를 가질 때보다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민간예술단체의 경우 상주단체로서 공연장소 및 기회를 보다 안정적으로 얻음으로써 상시공연체계를 마련하여 직업예술단체로서 활발한 활동을 영위하는 등 상호간 운영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 2) 법·제도 추진경과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제도는 2000년 1월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를 통해 법적근거를 갖추었다. 2007년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에 따라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로 변경되었고, 2011년 전문예술법인·단체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가 5월 25일에 개정(11월 6일 시행)되었다. 이로 인해 개정 이전 지정된 영리법인의 경우,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2013년 11월 25일 이후 전문예술법인의 자격이 상실되었다.(문화예술진흥법 부칙 제2조 참고) 그리고 전문예술법인·단체 운영실적 조사를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다. 2022년 1월 18일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개정(7월 19일 시행)을 통해 제7조 제4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을 취소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 표 2. 관련 법 개정 연혁 |

년/월/일	관련 법 개정 연혁
2000. 01. 12.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육성] 개정
2000. 10. 23.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3조의2[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 신설
2002. 12. 26.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3조의2[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 개정
2005. 06. 13.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3조의2[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 개정
2006. 03. 24.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육성] 개정
2007. 04. 11.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육성] 개정
2007. 09. 10.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4조[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 개정
2011. 05. 25.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 개정
2011. 11. 25.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4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개정
2011. 11. 25.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4조의2[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신설
2011. 11. 25.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4조3[전문예술법인·단체의 취소] 신설
2021. 01. 05.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4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개정
2022. 07. 19.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 개정
2022. 07. 19.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4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개정

2000년 제도가 시행되면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와 법인세 감면 및 기부금 손금산입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2001년에는 16개 광역시·도에서 참고할 수 있는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 조례지침'을 통보하였다. 2011년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되어 공포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다만 전문예술법인은 2018년 법인세법 개정 이후 별도의 신청 절차에 따라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 표 3. 관련 정책 추진 연혁 |

년/월/일	관련 정책 추진 연혁
2000. 05. 12.	재정경제부와 조세감면 협의 (법인세 감면 및 기부금 손금산입)
2001. 03. 12.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기준안에 대한 의견조회
2001. 05. 22.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 조례지침 통보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제도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전문예술법인·단체 평가센터'를 설치하였다. '전문예술법인·단체 평가센터'는 2002년에서 2005년까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서 위탁·운영하였다가, 2006년 발족한 (재)예술경영지원센터로 이전되었으며, 2019년 1월 1일부터 '전문예술법인·단체 경영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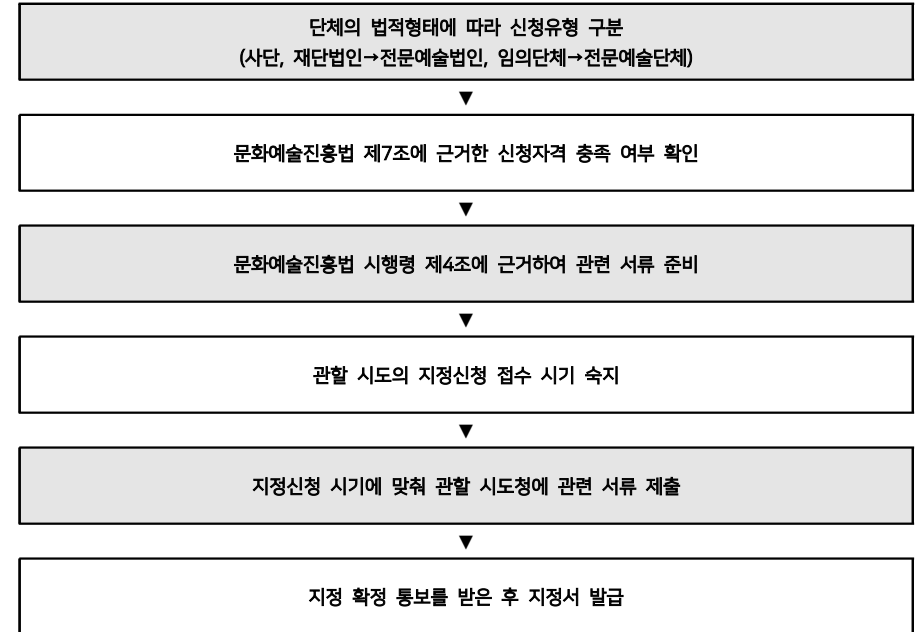
| 표 4. 전문예술법인·단체 평가센터 위탁운영 연혁 |

년/월/일	전문예술법인·단체 평가센터 위탁운영 연혁
2002. 12. 14 ~ 2005. 12. 16.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內 설치
2006. 01. 25 ~ 2018. 12. 31.	(재)예술경영지원센터 內 설치 이전 및 운영
2019. 01. 01. ~ 현재	'전문예술법인·단체 경영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변경

## 2.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절차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 표 6.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 절차 |



또한,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참조

| 표 7.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 시 제출 서류 |

필수 제출 서류	필수 제출 서류
1.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서 2.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3. 조직·인력 운영현황 자료(최근 2년) 1부 4. 사업계획서 1부	
해당하는 경우	1. 고유번호증 사본 1부 2. 박물관/미술관/공연장 등록증 사본 1부

### 3.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혜택

#### 1) 기부금 공개모집 가능 (공통)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공개모집할 수 있다.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대한 법률」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 ① 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모집·사용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지정·육성)

- ⑥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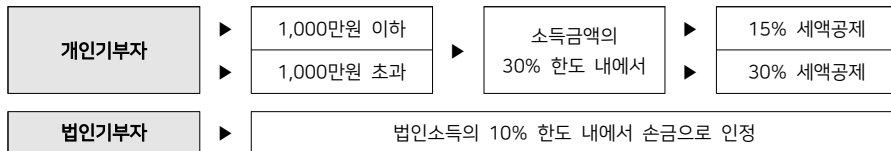
#### 2)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

전문예술단체 및 공익법인등에 기부한 개인이나 법인은 일정 한도 안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9년부터 적용되는 세법개정에 따라 개인 기부자인 경우 1천만원 이하 기부자 소득금액의 30% 한도에서 15%를 세액공제,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소득세법〕 제34조, 「소득세법」 제59조의4,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법인소득의 10%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된다.〔법인세법〕 제24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기획재정부 고시)

\* 공익법인으로 지정 받지 않은 전문예술법인은 해당사항 없음

| 표 8. 기부자 특성별 세액공제 및 손금산입 가능 범위 |



예시) 세후 연간 소득이 5천만원인 A씨가 1백만원의 기부금을 냈을 때의 공제 가능 금액

- A씨의 공제한도는 5천만원의 30%인 1천5백만원으로,  
1백만원의 경우 기부금 전액의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1백만원의 15%인 15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음

2018년 시행된 법인세법에 따라 전문예술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공익법인등(舊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에 해당하나, 전문예술법인은 2018년 법인세법 개정 이후 별도의 신청 절차에 따라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 3)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전문예술단체 및 공익법인 등)

전문예술단체 및 공익법인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48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가 면제된다.

\* 공익법인으로 지정 받지 않은 전문예술법인은 해당사항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 4) 각 시도별 행정적 지원 (공통)

각 지자체 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되면 각 시도별 조례에 근거하여 예산범위 내 경비보조, 공공자금지원 우선, 공공시설의 대관, 시설 무상 제공 등 기타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지원 내용은 각 시·도에 문의)

#### 4. 자주 묻는 질문

##### 1) 다양한 형태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 가능 여부

구분		전문예술법인	전문예술단체	불가능
법적형태	임의단체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사회적 협동조합	○		
정책제도	사회적기업	○ (법적형태가 비영리일 경우)		법적형태가 영리일 경우
	비영리 민간단체	○		

##### 2) 고유번호/사업자 등록번호를 통한 영리·비영리 확인 방법

000-00-00000의 형태로 구성된 10자리의 숫자 중, 두 번째 2자리는 개인 및 법인 구분코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단체 및 법인을 우선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

코드	구분
01~79	개인 과세사업자
80	원천징수만 있는 비사업자 (임의단체 고유번호)
81, 86~88	영리법인 (의 본점)
82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 임의단체
83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84	외국법인
85	영리법인의 지점
89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90~99	개인 면세사업자

단, 비영리→영리로의 법인격 변경 등의 경우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 3)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관련 주요 질문

<b>Q. 연습실 등, 소재지를 타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원래 지역에서 받은 전문예술단체 지정은 유효한가요?</b>
A. 17개 지자체별로 지정단체가 지정되어 관리되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원래 지역에서 받은 지정은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원래 지역의 지정권자에게 먼저 전달한 후, 이동한 지역의 지정 신청 기간에 맞춰 새로 지정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b>Q. 전문예술단체로 지정받은 상태에서 사단법인으로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예술단체에서 전문예술법인으로 변경 가능한가요?</b>
A. 전문예술단체와 전문예술법인의 제출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지정 취소 절차를 거친 후 지정 신청 기간에 맞춰 새로 지정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b>Q. 기업 소속 예술단체가 되어도 전문예술단체로 유지될 수 있나요?</b>

A. 비영리단체가 기업 소속의 예술단체로 조직을 변경한다는 것은 곧 비영리단체의 사업을 인수하는 것으로, 해당 예술단체는 영리조직의 일부에 해당하게 되므로 비영리 및 전문예술단체로의 유지는 불가능합니다.
<b>Q.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운영하다 폐업 및 해산 신고를 했을 경우 자등으로 취소되나요?</b>
A. 그렇지 않습니다. 관할 시/도청에 해산 및 폐업을 알리고 말소신청을 해야 취소 절차가 완료됩니다.
<b>Q. 전문예술법인·단체 선정 공고 시, 설립일에 대한 기준 및 제한이 필요한가요?</b>
A. 기본적으로 최근 2년간의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설립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을 의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기준이나 제한은 없으나, 지자체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시 실적 및 결산을 심사 항목으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 2) 공익법인등(舊지정기부금단체) 권한 관련 주요 질문

<b>Q. 4/4분기에 공익법인등(舊지정기부금단체)으로 지정받았는데, 지정받기 이전인 1/4~3/4분기에 기부금을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b>
A. 1/4~4/4분기 중 공익법인등(舊지정기부금단체)으로 지정되지만 하면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공익법인등(舊지정기부금단체)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공익법인등(舊지정기부금단체)으로 지정받은 후 1/4~3/4분기 기부금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을 교부해 주시면 됩니다.
<b>Q. 올해 설립해서 결산서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b>
A. 제출 가능한 사업연도의 결산서, 해당 사업 연도 예산서, 추천을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b>Q. 전문예술법인의 자격으로 후원회원을 모집할 경우, 후원회원의 회비도 기부금으로 보고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가요?</b>
A. 해당 후원금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사용되고, 사전에 회원들이 이 내용을 알고 후원회비를 납부했다면 기부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익법인등(舊지정기부금단체)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공익법인등의 권한이 있으므로 기부금 영수증 발행도 가능합니다. 단, 전문예술법인은 별도의 공익법인 신청이 필요함을 숙지 부탁드립니다.
<b>Q.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았는데, 증빙처리 과정을 상세하게 알고 싶습니다.</b>
A. 기부자가 법인일 경우 손금산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기부한 법인의 연간 소득 10%까지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신 후, 기부를 받은 단체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서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고,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b>Q. 현물기부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기부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면 되나요?</b>
A. 현물 역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기부금은 그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며, 현물기부에 관한 장부가를 확인하고 해당 서류를 증빙한 후 장부가를 기준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면 됩니다.
<b>Q. 축제 자원활동을 용역기부로 인정하여 활동비용만큼의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할까요?</b>
A. 자원활동의 경우 「세법」상 특별재난지역의 자원봉사만을 용역으로 인정합니다. 그 외의 자원봉사는 기부가액



으로 산정될 수 있는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b>Q. 개인과 법인으로부터 기부를 받은 경우 각각 영수증 서식이 다르는데, 어떤 걸 써야 하나요?</b>
A. 개인 기부자는 소득세법, 법인 기부자는 법인세법이 근거법률로 작용됩니다. 따라서 개인이 기부하였다면 「소득세법」상 기부금영수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7 서식), 법인이 기부하였다면 「법인세법」상 기부금 영수증(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 서식)을 사용하여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자료집 서식 5-1, 5-2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b>Q.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받기 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해 날짜를 바꿔서 발행해도 될까요?</b>
A. 기부금 영수증은 실제로 기부금을 수령한 날짜로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익법인등(舊지정기부금단체)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시기 이전에 접수된 기부금품에 대해서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b>Q. 세무서에 갔는데 전문예술단체의 공익법인등(舊지정기부금단체) 자동지정에 대해 모르다는 답변을 받았습니.</b>
A. 공익법인등(舊지정기부금단체)의 경우 매분기(1/4~4/4분기)마다 기획재정부의 고시에 따라 지정단체 리스트가 공개됩니다. 그러나 전문예술단체의 경우 근거법상 자동 포함되기 때문에 기재부에 의해 리스트가 따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전문예술단체의 공익법인등(舊지정기부금단체) 당연지정에 대한 근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 전문예술법인 은 별도의 공익법인(舊지정기부금단체) 신청 필요
<b>1.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다목</b> 다.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b>2. 기획재정부 고시 중 [ 7. 공익목적 기부금 범위]</b> 34.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따른 전문예술단체에 문화예술진흥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붙임 1. 전문예술법인·단체 관련 법령

### ■ 문화예술진흥법 [법률 제18984호, 2022. 9. 27., 일부개정]

#### 제7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시·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이하 "전문예술법인·단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3.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4.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③ 제1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2. 1. 18.>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예술활동의 실적 저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 그 밖에 전시·공연 질서 문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22. 1. 18.>
  - ⑥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개정 2022. 1. 18.>
  -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예술법인·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전문예술법인·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2. 1. 18.>
  -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2. 1. 18.>
- [전문개정 2011. 5. 25.]

#### 부칙 [법률 제10725호, 2011. 5. 25.]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전문예술법인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을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받은 자 중 영리법인·단체의 경우에는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이 법에 따른 전문예술법인·단체로 본다.

**부칙** [법률 제18769호, 2022. 1.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3조·제18조제5호의2 및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8984호, 2022. 9. 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29호, 2023. 3. 14., 일부개정]

**제4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 ① 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이하 "전문예술법인·단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 1. 5., 2022. 7. 19.>
  -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의 조직·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 5. 사업계획서 1부
  - 6. 삭제<2021. 1. 5.>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2. 사업자등록증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한다.<개정 2021. 1. 5.>
  - 1. 조직·인력 운영의 적정성
  - 2. 재정 운영의 건전성
  - 3. 공연·전시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수행 능력 또는 공연·전시시설의 운영 능력
  - 4. 공연·전시된 작품의 예술적 완성도
  - 5.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다.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도지사가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22. 7. 19.>

[전문개정 2011. 11. 25.]

**제4조의2(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 ① 법 제7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가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서
    -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변경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서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본조신설 2011. 11. 25.]

**제4조의3(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취소)**

- ① 법 제7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기획 또는 제작한 공연·전시 실적이 연 1회 미만인 경우
    - 2. 1년 이상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지 않거나 공연·전시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 ② 법 제7조 제4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전시·공연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술활동 실적을 제출하여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행위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취소 기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1. 11. 25.]

**부칙** [대통령령 제23318호, 2011. 11.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79호, 2021. 1. 5.]

(지정·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804호, 2022. 7.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32 9호, 2023. 3. 14.]

이 영은 2023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법인세법** [법률 제19193호, 2022. 12. 31., 일부개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 12. 24.>
-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22., 2021. 8. 17., 2021. 12. 21., 2022. 12. 31.>

1. 특례기부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 중략

바.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만 해당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2. 손금산입한도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기준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소득은 제외하고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과 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퍼센트를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기준소득금액의 80퍼센트를 한도로 한다)] × 50퍼센트

③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22., 2022. 12. 31.>

1. 일반기부금: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손금산입한도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기준소득금액 -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퍼센트를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기준소득금액의 80퍼센트를 한도로 한다) - 제2항에 따른 손금산입액(제5항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 × 10퍼센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은 20퍼센트로 한다)

④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22.>

⑤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기부금 중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기부금 각각의 손금산입한도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8. 12. 24., 2019. 12. 31., 2020. 12. 22.>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먼저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이월된 금액은 먼저 발생한 이월금액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19. 12. 31., 2020. 12. 22.>

[전문개정 2010. 12. 30.]

■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621호, 2023. 7. 7., 타법개정]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 12. 29., 2001. 12. 31., 2005. 2. 19., 2006. 2. 9., 2007. 2. 28., 2008. 2. 22., 2008. 2. 29., 2009. 2. 4., 2010. 2. 18., 2010. 8. 25., 2010. 12. 30., 2011. 3. 31., 2012. 2. 2., 2012. 8. 3., 2013. 2. 15., 2014. 2. 21., 2016. 2. 12., 2017. 2. 3., 2017. 5. 29., 2018. 2. 13., 2019. 2. 12., 2020. 2. 11., 2021. 2. 17., 2022. 2. 15., 2022. 2. 17.>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한정한다.

... 중략

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제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이 경우 국제청장은 해당 법인의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추가적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8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중략

2)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법인의 공익위반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 국제청 또는 주무관청 등 공익위반사항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하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기관”이라 한다) 중 1개 이상의 곳에 제보가 가능하도록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법인이 개설한 홈페이지가 연결되어 있을 것

4) 비영리법인으로 지정·고시된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5) 제1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제9항에 따라 추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다만, 제5항 제1호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유만으로 지정이 취소되거나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다음 각 목의 기부금

... 중략

다.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 중략

④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03. 12. 30., 2008. 2. 29.>

⑤ 제1항 제1호 각 목(마목은 제외한다)의 공익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같은 호 바목의 공익법인등은 지정기간(제4호의 경우에는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포함한다) 동안 해당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신설 2014. 2. 21., 2016. 2. 12., 2018. 2. 13., 2018. 10. 30., 2020. 2. 11., 2021. 2. 17., 2022. 2. 15., 2023. 2. 28.>

1. 제1항 제1호 바목 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법인만 해당한다)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추가적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할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8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나.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할 것

다.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의 경우: 사회복지·자선·문화·예술·교육·학술·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할 것

3.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다음 각 목에 따라 공개할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5 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공개를 모두 한 것으로 본다.

가. 해당 공익법인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

나.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4. 해당 공익법인등의 명의로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5. 각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5의2.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동안 고유목적사업의 지출내역이 있을 것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 제1항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공익법인등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5 제2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⑥ 제1항 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제5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 여부(이하 이 조에서 "의무이행 여부"라 한다)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익법인등이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장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신설 2010. 2. 18., 2011. 3. 31., 2014. 2. 21., 2018. 2. 13., 2020. 2. 11., 2021. 2. 17., 2023. 2. 28.>

1. 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유치원만 해당한다)에 따른 공익법인등(해당 사업연도에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㉗ 국세청장은 제6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점검해야 하며, 그 점검결과 제5항 제3호에 따른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지 않거나 그 공개 내용이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금 지출 내역에 대한 세부내용을 제출할 것을 해당 공익법인등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익법인등은 해당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부금 지출 내역에 대한 세부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2. 11., 2021. 2. 17.>

㉘ 국세청장은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의 취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해야 한다. <신설 2007. 2. 28., 2008. 2. 22., 2008. 2. 29., 2010. 2. 18., 2011. 3. 31., 2012. 2. 2., 2014. 2. 21., 2017. 2. 3., 2018. 2. 13., 2019. 2. 12., 2021. 2. 17.>

1.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제3항,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제78조제5항제3호, 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상속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 또는 증여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추징당한 경우

2. 공익법인등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에 위반한 사실, 제5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 또는 제6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따라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4. 공익법인등의 대표자, 임원, 대리인, 직원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공익법인등 또는 개인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5. 공익법인등이 해산한 경우

㉙ 국세청장은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의 지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공익법인등의 지정기간 중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정기간 종료 후 3년간 공익법인등에 대한 추천을 하지 않아야 하며, 이미 재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요청해야 한다. <신설 2010. 2. 18., 2014. 2. 21., 2017. 2. 3., 2018. 2. 13., 2020. 2. 11., 2021. 2. 17.>

㉚ 국세청장은 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취소를 요청하기 전에 해당 공익법인등에 지정취소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 그 사유 및 법적근거 등을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16. 2. 12., 2018. 2. 13., 2020. 2. 11., 2021. 2. 17.>

㉛ 제10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공익법인등은 그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0. 2. 11., 2021. 2. 17.>

㉜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공익법인등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1., 2021. 2. 17.>

㉝ 국세청장은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지정되거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주무관청은 같은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세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 2. 11., 2021. 2. 17.>

㉞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6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라목 또는 아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이 2021년 1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제1항 제1호 바목 후단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추천 신청을 받아 2022년 3월 31일까지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지정·고시를 할 수 있다. <신설 2022. 2. 15.>

㉟ 제1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4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정기부금단체등에 2021년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5년간) 지출했거나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 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으로 본다. <신설

2022. 2. 15.>

⑩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의 신청 및 추천방법, 지정절차, 지정요건의 확인방법 및 제출서류와 지정 취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 2. 28., 2008. 2. 29., 2010. 2. 18., 2010. 12. 30., 2013. 2. 15., 2014. 2. 21., 2016. 2. 12., 2018. 2. 13., 2020. 2. 11., 2021. 2. 17., 2022. 2. 15.>

[제목개정 2021. 2. 17.]

[제36조에서 이동, 종전 제39조는 제42조로 이동 <2019. 2. 12.>]

### ■ 법인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03호, 2023. 7. 3., 일부개정]

#### 18조의3(공익법인등의 범위)

- ① 영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지정은 매분기별로 한다.
- ② 영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추천을 받으려는 법인은 별지 제63호의5 서식의 공익법인등 추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직전달 10일까지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3. 16., 2023. 3. 20.>
  - 1. 법인 등의 설립 또는 등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의 경우: 법인설립허가서
    -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의 경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 다.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외국의 정부가 발행한 해당 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 정관
  - 3. 최근 3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다만, 제출일 현재 법인 등의 설립기간이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제출 가능한 사업연도의 결산서
    - 나.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 다. 국세청장에 추천을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
  - 4.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영 제39조 제1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정기간이 6년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기부금 모집을 통한 사업계획서
  - 5. 법인 대표자의 별지 제63호의6 서식의 공익법인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영 제39조 제1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정기간이 3년인 경우에 한정한다)
  - 6. 기부금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영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정기간이 6년인 경우에 한정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공익법인등 추천신청서 및 같은 항 각 호의 서류(이하 “추천신청서류”라 한다)를 제출받은 국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추천 대상인 법인의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천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직전 달 10일까지 추천기관의 법인명, 대표자, 사업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63호의2 서식의 공익법인등 추천서에 추천신청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3. 16., 2023. 3. 20.>

④ 영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이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정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공익법인등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같은 호 바목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추천신청서류를 제출하고 제3항에 따른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새로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1. 3. 16., 2022. 3. 18.>

⑤ 영 제39조 제8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연도별 1천만원을 말한다.

⑥ 공익법인등은 명칭이 변경된 경우로서 지정요건을 계속 충족하고 있는 경우 별지 제63호의5 서식의 공익법인등 명칭변경신청서에 해당 공익법인등의 정관과 제2항 제1호 다목의 서류(비영리외국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그 공익법인등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3. 3. 20.>

⑦ 제6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국세청장은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직전 달 1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명칭이 변경된 공익법인등의 명단을 통보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공익법인등의 명칭이 변경된 사실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1. 3. 16.>

[전문개정 2020. 3. 13.]

[제목개정 2021. 3. 16.]

### ■ 기획재정부 고시 [7. 공익목적 기부금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번호	기부금
34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따른 전문예술단체에 문화예술진흥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 소득세법 [법률 제19196호, 2022. 12. 31., 일부개정]

####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8. 12. 31.>
- ②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29., 2022. 12. 31.>
  - 1. 특례기부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 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
    -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이 경우 용역의 가액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text{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A - B$$

A: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초소득 금액”이라 한다)

B: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조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

③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29., 2022. 12. 31.>

1. 일반기부금: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2.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text{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A - (B + C)] \times 100\text{분의 } 10\} + \{[A - (B + C)] \times 100\text{분의 } 20\text{과 종교단체 외에 기부한 금액 중 적은 금액}\}$$

A: 기준소득금액  
B: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  
C: 이월결손금

나.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text{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A - (B + C)] \times 100\text{분의 } 30$$

A: 기준소득금액  
B: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  
C: 이월결손금

- ④ 제2항 제1호 및 제3항 제1호 외의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29.>
- ⑤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기부금 중 제2항 제2호 및 제3항 제2호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특례기부금 및 일반기부금의 금액(제59조의4 제4항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부금의 금액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1., 2020. 12. 29., 2022. 12. 31.>
- ⑥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은 해당 사업자의 기부금에 포함한다. <개정 2010. 12. 27., 2016. 12. 20.,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29.>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금의 계산, 제출서류, 기부금을 받는 단체의 관리 등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29.>

[전문개정 2009. 12. 31.]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④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되,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포함한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제61조 제2항에서 "기부금 세액공제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되,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기부금을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소득공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한다. <개정 2014. 12. 23., 2015. 12. 15., 2016. 12. 20., 2018. 12. 31., 2020. 12. 29., 2022. 12. 31.>

1. 제34조 제2항 제1호의 특례기부금
2. 제34조 제3항 제1호의 일반기부금. 이 경우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득금액"이라 한다] × 100분의 10 + [소득금액의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기부한 금액 중 적은 금액]
  - 나. 가족 외의 경우  
한도액 = 소득금액의 100분의 30

**■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621호, 2023. 7. 7., 타법개정]

**제80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 ① 법 제34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 12. 29, 2001. 12. 31., 2005. 2. 19., 2008. 2. 22., 2008. 2. 29., 2010. 2. 18., 2010. 12. 30., 2012. 2. 2., 2013. 3. 23., 2014. 2. 21., 2014. 11. 19., 2017. 7. 26., 2019. 2. 12., 2020. 2. 11., 2021. 2. 17., 2022. 2. 15.>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각 호의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비
    -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 나. 「교육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교원단체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 다.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 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3. 위탁자의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사망 또는 약정한 신탁계약 기간의 종료로 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한 신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에 신탁한 금액
    - 가. 위탁자가 사망하거나 약정한 신탁계약기간이 위탁자의 사망 전에 종료하는 경우 신탁재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할 것
    - 나. 신탁설정 후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금 일부를 반환할 수 없음을 약관에 명시할 것
    - 다. 위탁자와 가목의 공익법인 등 사이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3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가 없을 것
    - 라. 금전으로 신탁할 것
  4. 삭제 <2010. 2. 18.>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이하 이 조에서 "공익단체"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공익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지출하는 기부금만 해당한다.

가.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나. 수입 중 개인의 회비·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것. 이 경우 다음의 수입은 그 비율을 계산할 때 수입에서 제외한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부터 지원받는 금액

다.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라.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비영리민간단체 명의의 통장으로 회비 및 후원금 등의 수입을 관리할 것

마. 삭제 <2021. 2. 17.>

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등과 관련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을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 것으로 본다.

- 1)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일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 2) 1)에 따라 개설된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 3) 재지정의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1)에 따라 개설된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했을 것

사.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 또는 그 직전 과세기간에 공익단체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6. 삭제 <2010. 2. 18.>

② 국세청장은 공익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단체에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준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공익단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07. 2. 28., 2008. 2. 22., 2008. 2. 29., 2008. 12. 31., 2010. 2. 18., 2013. 3. 23., 2014. 2. 21., 2014. 11. 19., 2017. 7. 26., 2018. 2. 13., 2021. 2. 17., 2022. 2. 15.>

1. 공익단체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항,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제78조 제5항 제3호, 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1천만원 이상의 상속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 또는 증여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추징당한 경우
2. 공익단체가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에 위반한 사실을 주무관청의 장(행정안전부장관을 포함한다)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경우
3.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따른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에 해당되어 명단이 공개되는 경우
4. 제1항 제5호 각 목의 요건을 위반하거나 실제 경영하는 사업이 해당 요건과 다른 경우
5. 공익단체가 해산한 경우
6. 공익단체의 대표자, 임원, 대리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공익단체 또는 개인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7. 공익단체가 제3항 후단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결산보고서 또는 수입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③ 공익단체는 해당 과세기간의 결산보고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익단체가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공익단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08. 2. 22., 2008. 12. 3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2. 17., 2022. 2. 15.>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08. 2. 22., 2008. 12. 3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전체 수입 중 개인의 회비 및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
2. 기부금의 총액 및 건수와 그 사용명세서

⑤ 공익단체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익단체가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은 그 공익단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신설 2008. 2. 22., 2008. 2. 29., 2015. 2. 3., 2017. 2. 3., 2021. 2. 17., 2022. 2. 15.>

⑥ 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단체에 대하여는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재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8. 2. 22., 2014. 2. 21.>

⑦ 제1항 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의 지정절차, 같은 호 각 목의 요건 확인방법, 제출서류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취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2. 22., 2008. 2. 29., 2021. 2. 17., 2022. 2. 15.>

[전문개정 1999. 12. 31.]  
[제목개정 2021. 2. 17.]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90호, 2021. 10. 19., 일부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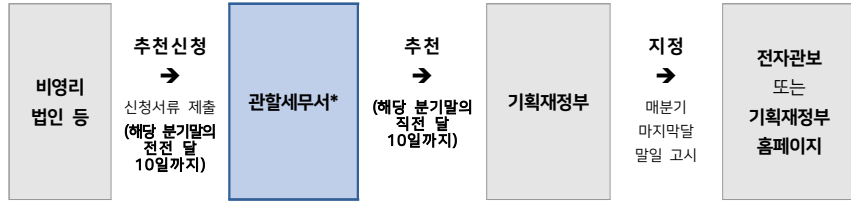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8., 2016. 2. 3., 2021. 10. 19.>

1. 「정치자금법」
2. 「결핵예방법」
3. 「보훈기금법」
4. 「문화예술진흥법」
5. 「한국국제교류재단법」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7. 「재해구호법」
8.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9.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10.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1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 붙임 2. 공익법인등(舊지정기부금단체)의 추천신청 안내

◇ '21년부터 기부금단체 **추천 업무가 주무관청에서 국세청(관할세무서)**으로 이관되고, 기부금단체 **추천 신청 서류가 추가**(의무이행서약서 등)되는 등 **추천신청 방법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한 방법을 안내해 드리오니 공익법인등의 지정(재지정) 추천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1. 추천 및 지정절차 흐름



\* '21. 1. 1. 이후 지정추천 업무를 국세청으로 이관(주무관청→국세청)

### 2. 추천신청 접수기간

◇ 공익법인등은 분기별로 지정하며 분기별 추천신청서 접수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접수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분기 추천이 불가하오니 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추천신청서 접수기간 (비영리법인 등 → 국세청)	추천기한 (국세청 → 기재부)	기재부 지정일
1분기	전년도 10.11 ~ 당해연도 1.10	2. 10	3.31
2분기	당해연도 1.11~4.10	5. 10	6.30
3분기	당해연도 4.11~7.10	8. 10	9.30
4분기	당해연도 7.11~10.10	11. 10	12.31

☞ (예) '23년 이내에 지정을 받으려면 국세청(관할세무서)에 '23.10.10.까지 추천 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후 신청시에는 다음연도('24년) 추천 대상이 됩니다.

### 3. 신청 대상

◇ 공익법인등으로 신청할 수 있는 단체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민법상 사단·재단법인 또는 비영리 외국법인, (나)사회적협동조합, (다)공공기관(공기업 제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입니다.

## 공익법인 등의 지정요건(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1호 바목)

1)	<p>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추가적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p> <p>* 사업의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이어야 하는 취지는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회원 및 소수의 특정인만을 위해 한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p> <p>나)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일 것</p> <p>다)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의 경우: 설립목적이 사회복지·자선·문화·예술·교육·학술·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일 것</p> <p>* 공익목적이 아닌 회원 또는 회원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이거나 친목도모 성격의 단체는 지정대상에서 배제됩니다.</p> <p>** 단체명에 생존하는 특정인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정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p>
2)	<p>○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p> <p>* 가능한 정관에 상기 문구를 그대로 인용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이와 달리 [유사한 다른 비영리단체, 유사한 다른 법인, 유사법인 또는 유사한 다른 단체에 잔여재산을 귀속한다]로 기재하는 경우 지정(추천)이 제한될 수 있으니 정관 개정 또는 추천신청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이 「협동조합 기본법」 제104조에 따라 해산시 잔여재산의 처리를 정관에 규정한 경우는 인정됩니다.</p>
3)	<p>○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sup>1)</sup>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sup>2)</sup>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법인의 공익위반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또는 주무관청 등 공익위반사항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하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 기관”이라 한다) 중 1개 이상의 곳에 제보가 가능하도록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법인이 개설한 홈페이지가 연결되어 있을 것</p> <p>* 블로그, 카페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①포털사이트 검색이 가능하고, ②연중 자료열람에 제한이 없는 등 홈페이지의 기능을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p> <p>1) 홈페이지 주소를 추천 신청서에 기재하고, 반드시 불특정다수가 공익목적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정기부금단체 명의의 독립된 한글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어야 합니다.</p> <p>2)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해야 합니다.</p> <p>* 재지정신청의 경우 공익법인으로 지정되었을 때부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해당 비영리법인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하였을 것</p>
4)	<p>○ 비영리법인으로 지정·고시된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p> <p>* 당선되지 않거나 되지 않게 하기 위한 행위</p>
5)	<p>○ 제1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제9항에 따라 추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났을 것. 다만, 제5항제1호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유*만으로 지정이 취소되거나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p> <p>* 정관요건(1~3)을 지키지 못하여 지정 취소(재지정제한)된 경우에는 5)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p>



※ 유의사항

◇ 아래의 단체(1.~3.)는 공익법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의 지위 유지를 위해 '21년부터 지정 추천 절차에 따라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18. 2. 13.)

1. 2018. 2. 13. 전에 인·허가 받은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문화예술·환경단체
2. 2018. 1. 1. 전에 (구)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7로 지정됐던 단체 중 지정기한이 만료되는 단체
3. 2018. 2. 13. 전에 (구)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2로 지정됐던 기부금단체

4. 신청시 구비서류

◇ 추천신청서(㉠)에 ㉡~㉣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 ① 공익법인등 추천신청서(『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5 서식) ⇨ (참고1)
- ② 법인의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구분	제출서류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법인설립허가서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비영리외국법인	외국의 정부가 발행한 해당법인의 설립에 관해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영문서류는 한글 번역서류도 포함하여 제출)

- ③ 정관
- ④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2023년) 예산서
  - \* 2022년 결산종결 전 : 2019년~2021년 결산서 제출
  - \*\* 제출일 현재 법인 설립기간이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i) 제출가능한 사업연도의 결산서, (ii)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iii) 추천을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를 제출
- ⑤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향후 3년(2023년~2025년)\*동안 기부금 모집을 통한 사업계획서 ⇨ (참고2) \* 재지정 신청의 경우 5년(2023년~2027년)
- ⑥ 법인 대표자의 공익법인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6 서식) ⇨ (참고3)
  - \* 신규지정 신청시에만 제출
- ⑦ 기부금 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 ⇨ (참고4)
  - \* 재지정 신청시에만 제출

5. 신청방법

◇ 다음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① (전자방식)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한 전자 접수 ⇨ (참고8)
  - \* 홈택스(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공익법인 지정추천 신청」
- ② (우편/방문)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접수

6. 공익법인의 지정기간

◇ 공익법인으로 지정받게 되면 지정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신규)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23.1.1.~'25.12.31.)
- ② (재지정) 지정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 재지정되는 경우 재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23.1.1.~'28.12.31.)

(예시) 홍길동 장학재단

- i) '23.6.30. 신규 지정시 : '23.1.1.~'25.12.31.(신규지정은 지정기간 3년)
  -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로 지정기간을 소급 적용
- ii) '26.6.30. 재지정시 : '26.1.1.~'31.12.31.(2년이내 재지정되어 지정기간 6년 적용)
- iii) '27.6.30. 재지정시 : '27.1.1.~'32.12.31.(2년이내 재지정되어 지정기간 6년 적용)
- iv) '28.6.30. 지정시 : '28.1.1.~'30.12.31.(지정기간 종료 후 2년초과로 3년 적용)
  - '23년도에 지정을 받고 지정기간 종료 후 2년 경과 후 지정된 경우로서 신규지정으로 봄

7. 기부자에 대한 세제혜택

◇ 기부자가 기부하면 어떤 세제혜택이 주어지는지 문의하는 경우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기부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법인이 기부한 경우 기부금은 법인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인정
- ② 개인이 기부한 경우 개인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 10%)를 한도로 15%(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 단, 개인사업자가 기부한 경우 동일한 한도 내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

8. 법인세법상 의무사항

◇ 공익법인등으로 지정되면 아래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①의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의무이행 사항을 보고하지 않는 경우 공익법인등 지정 취소, ②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의무이행 및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 (⇨참고5) → 위반시 공익법인 지정취소 대상

① 공익법인등은 지정기간 동안 아래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① 지정요건 ㉠~㉣을 모두 충족할 것

- ① 정관에 수입을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등이 포함
- ② 정관에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자체, 유사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는 내용이 포함
- ③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정관에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익위반제도가 가능하도록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또는 주무관청 등의 홈페이지 중 1개 이상이 해당법인의 홈페이지에 연결되어 있을 것

- ② 수입을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등
- ③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단체 및 국세청 홈페이지<sup>1)</sup>에 각각 공개<sup>2)</sup>할 것
  - 1) 홈택스(www.hometax.go.kr) > 세금종류별 서비스 > 공익법인 공시 >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 2)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공개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결산서류 등을 공시한 경우 등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5조제6항에 따른 표준서식으로 공시한 경우에 한함(「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2 서식 (=참고7))
- ④ 공익법인등 또는 그 대표자 명의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 ⑤ 각 사업연도의 지출액(수익사업 지출 제외)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 ⑥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최근 2년 동안 고유목적사업의 지출내역이 있을 것
- ⑦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 ⑧ 결산서류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단체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각각 공시할 것
  - 다만, 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간편서식 가능
- ⑨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를 받을 것
  -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총자산가액 100억원 미만이면서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 재산가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와 종교·학교법인은 제외

② 공익법인은 매년 「공익법인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0 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사업연도 종료일이 '23. 12. 31.인 경우 : '24. 4. 30.까지 보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

② 기부금영수증 관련 의무사항 → 위반시 가산세 부과대상

- 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 서식(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 서식)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 (부록 1 서식 5-1, 5-21)
-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2 서식,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7 서식)하여야 합니다. ⇨ (부록 1 서식 6)
- ③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건수 및 금액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3 서식) ⇨ (부록 1 서식 7)

## 9. 지정취소 사유 및 재지정 배제

◇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의무사항<sup>(8번)</sup>외에도 아래의 사유로 지정취소될 수 있으며, 지정기간 종료 후에도 지정기간 중 지정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지정이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공익법인 지정 및 재지정 취소 사유

공익법인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익법인등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8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3 제8항).

- ①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항 및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제78조 제5항 제3호, 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1천만원 이상의 상속세(가산세를 포함) 또는 증여세(가산세를 포함)를 추징당한 경우
- ② 공익법인등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에 위반한 사실, 이행의무를 위반한 사실 또는 의무이행 여부의 보고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 ③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따라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 ④ 공익법인등의 대표자, 임원, 대리인, 직원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익법인등 또는 개인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 ⑤ 법인이 해산한 경우

## 10.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사항

◇ 공익법인등으로 지정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하므로 다음의 의무사항을 지켜야 하며, 지키지 않는 경우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국세청에 제출·신고해야 하는 서류

구분	내용	
① 전용계좌개설 신고	• 대상	모든 공익법인 (종교단체 제외)
	• 신고기한	최초로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
②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 대상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
	• 제출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③ 결산서류 공시	• 대상	모든 공익법인 (종교단체 제외) 다만, 자산가액 5억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가능
	• 공시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④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	• 대상	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 제출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⑤ 외부 회계 감사보고서 제출	• 대상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가액 100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50억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가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종교·학교법인, 유치원 제외)
	• 제출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2 공익법인 운영시 지켜야 하는 의무

구분	내용	
1 장부의 작성·비치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내용 등에 대한 장부 작성 (10년간 보존)	
2 전용계좌 사용	전용계좌 사용의무 대상거래에 대해서 전용계좌 사용	
3 출연재산 등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이후 계속하여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매각대금	1년 내 30%, 2년 내 60%, 3년 내 90% 이상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운용소득	1년 내 70%이상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주식 5% 초과 보유한 공익법인은 80%)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매년 수익용 재산의 1%(주식 10% 초과 보유한 공익법인은 3%)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4 주식관련	의결권 있는 내국법인 주식의 일정 비율 초과 보유 금지 * 일반공익법인 10%(자선·장학·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고 출연받은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20%),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있거나 상증법 제48조 제11항 각호의 사후관리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공익법인 5%	
	계열기업의 주식보유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이액이 총자산가액의 30%(외부감사, 전용계좌 개설·사용, 결산서류 공시이행시 50%) 초과보유 금지
5 이사구성 등 제한	출연자 등이 이사의 1/5 초과 금지 또는 임직원 취임 금지 외부 회계감사의무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대상 공익법인	
6 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	(의료법상 의료법인,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 등 제외)	
7 기타	특정기업의 광고 등 행위 금지, 자기내부거래 금지, 특정계층에만 공익사업 혜택 제공 금지 등	

11. 기타 안내

◇ 이미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은 비영리법인 등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명칭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단체 → 국세청

아래의 구비서류와 함께 관할세무서(또는 홈택스)로 지정공익법인의 명칭변경 신청(추천신청 접수기간과 동일)을 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1 공익법인 명칭변경 신청서(「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5 서식) (참고1)
- 2 정관(구 정관, 신 정관, 신규 대비표 첨부)

□ 국세청 → 기재부

해당 법인이 명칭변경 후에도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할세무서는 기획재정부로 명칭변경을 의뢰하고 기획재정부는 매분기 종료일까지 그 사실을 관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합니다.

참고1

공익법인등 추천, 명칭변경 신청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5서식] <개정 2023. 3. 20.>

공익법인등 [ ] 추천  
[ ] 명칭변경 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1 신청대상 법인의 구분	[ ] 민법상 비영리법인 [ ] 사회적협동조합 [ ] 공공기관등 [ ] 비영리외국법인
2 신청대상법인의 신청 구분	[ ] 추천 신청(지정기간 3년): 최초 지정신청 또는 지정기간 종료 후 2년 경과 후 지정신청의 경우 [ ] 추천 신청(지정기간 6년): 지정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재지정신청의 경우 [ ] 명칭변경 신청

신청대상법인 인적사항	법인(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연락처	설립일 홈페이지주소
	본점 및 주사무소 소재지 주무관청명	주무관청 부서명
사업내용		

기부금 모집내역	기부금 모집 목적				
	기부금 모집기간 및 목표액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재지정은 5년)간]	(단위: 백만원)			
	년	년	년	합계	
	년	년			

명칭변경 사항	변경 전 법인(단체)명	변경 후 법인(단체)명
---------	--------------	--------------

대리인이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위임장	본인은 공익법인등 추천 및 명칭변경 신청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대리인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공익법인등 추천신청서류 및 명칭변경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  
세무서장

첨부서류	뒤쪽 참조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추천신청서류	1. 법인 등의 설립 또는 등록에 관한 다음의 서류 (1) 민법상 비영리법인, 공공기관등의 경우: 법인설립허가서 (2)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3)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외국의 정부가 발행한 해당 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정관 3. 최근 3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예시: 해당 사업연도가 2023년인 경우 2020년~2022년 결산서 및 2023년도 예산서, 2022년 결산 전인 경우 2019년~2021년 결산서 및 2023년 예산서). 다만, 제출일 현재 법인 등의 설립기간이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i) 제출 가능한 사업연도의 결산서 (ii)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iii) 국제청장에 추천을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를 제출합니다. 4.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지정기간이 6년인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기부금 모집을 통한 사업계획서 5. 법인 대표자의 [별지 제63호의6서식]의 공익법인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지정기간이 3년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6. 기부금 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지정기간이 6년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명칭변경신청서류	1. 외국의 정부가 발행한 해당 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정관(구 정관, 신 정관, 신규 대표표 첨부)

**작성 방법**

- ①란은 아래를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민법상 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른 사단·재단 법인
  -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공공기관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추천대상단체가 아닙니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 비영리외국법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외국법인
- ②란은 아래를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최초로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 또는 지정기간이 종료된 후 2년이 경과된 법인이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 공익법인등으로 인정
  - 지정기간이 종료된 후 2년 이내인 법인이 재지정신청을 하는 경우: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공익법인등으로 인정
- '명칭변경 사항' 은 명칭변경 신청 시에만 작성합니다(명칭변경 신청 시 '기부금 모집내역' 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참고2**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예시)**

**사업계획서(자율양식)**

※ 제시된 내용을 포함하되 목차 및 양식을 자유롭게 재구성·활용할 수 있습니다.

**I. 주요사업 목표**

- 1.
- 2.
- 3.

**II. 세부사업 내용**

1. (제1사업명)

가. 목 적 :

나. 사업내용 :

(1) 사업기간 :

(2) 장 소 :

(3) 수혜대상 :

다. 기부금 모금 목표액 :

라. 기부금 관리방법 :

마. 세부추진계획 :

바. 소요예산 : 금○○○원

(1) 인건비 :

(2) 운영비 :

(3) 기 타 :

2. (제2사업명)

3. (제3사업명)

공익법인 등의 대표(이사장)

(서명 또는 인)

참고3

공익법인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6서식] <개정 2023. 3. 20.>

공익법인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

○ 법인·단체명 또는 기관명:

○ 본인은 위 법인·단체 또는 기관의 대표자로서 해당 법인 등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지정되는 경우 그 지정기간 동안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의무이행 사항을 충실하게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위 법인·단체 또는 기관의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세무서장 귀하

유의사항

위 법인·단체 또는 기관의 주사무소 및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참고4

기부금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 (예시)

공익활동보고서(자율양식)

※ 제시된 내용을 포함하되 목차 및 양식을 자유롭게 재구성·활용할 수 있습니다.

I. 주요 공익활동 실적

- 1.
2.
3.

II. 공익활동 실적

- 1. (제1공익활동)
가. 목 표 :
나. 활동내용 :
(1) 활동기간 :
(2) 장 소 :
(3) 수혜대상 :
다. 기부금 지출액 : 금○○○원
(1) 인건비 :
(2) 운영비 :
(3) 기 타 :
라. 당초 사업계획 달성 여/부 :
마. 기타사항 :

2. (제2공익활동)

3. (제3공익활동)

※ 첨부 : 공익활동 행사사진, 홍보책자, 기타 유인물 등 다양한 자료 첨부

공익법인 등의 대표(이사장) (서명 또는 인)

## 참고5 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10서식] <개정 2023. 3. 20.>

### 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b>1. 단체 기본사항</b>		사업연도	. . . ~ . . .
① 법인(단체)명		②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공익법인등 지정 및 만료일	지정일 : 만료일 :
⑤ 소재지		⑥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2. 의무이행 여부		⑩ 의무 이행 여부
	⑨ 의무	
⑦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바목의 공익법인등	(가)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나) 정관의 내용상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을 것	
	(다)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법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가 연결되어 있을 것	
	(라) 공익법인등이 실제운영상 (가) 의무를 이행할 것	
⑧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의 공익법인등	(마)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기부금단체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각각 공개할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한 것으로 봄)	
	(바) 해당 공익법인등의 명의로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사)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동안 고유목적사업의 지출내역이 있을 것	
	(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등을 해당 공익법인등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	
	(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제6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단체의 직인) [인]

**국세청장** 귀하

#### 작성 방법

1. 이 서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제6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를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세청에 제출할 때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2. ④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익법인등의 경우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을 지정기간으로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참고6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7서식] <개정 2023. 3. 20.>

###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앞쪽)

<b>1. 기본사항</b>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공익법인등 구분	
⑤ 전자우편주소		⑥ 사업연도	
⑦ 전화번호		⑧ 공익법인등 지정일	
⑨ 소재지			

2. 기부금의 수입·지출 명세							(단위: 원)
⑩ 월별	⑪ 수입	⑫ 지출	⑬ 잔액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전기이월	-	-		8월			
1월				9월			
2월				10월			
3월				11월			
4월				12월			
5월				합계			
6월				7월			
7월				차기이월	-	-	

3.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단위: 원)
⑭ 지출월	⑮ 지급목적	⑯ 지급건수	⑰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⑱ 금액	
합계					

4.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외사업)						(단위: 원)
⑳ 연도별	㉑ 국가명	㉒ 지급목적	㉓ 수혜인원	㉔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㉕ 금액	
합계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8항 또는 제39조제5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공익법인등의 직인)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작성 방법**

1. 기본사항 : ① ~ ⑨란에는 공익법인등의 기본사항을 적으며, ④ 공익법인등의 구분은 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학교(유치원),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한국학교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9)에 해당하는 한국학교를 말합니다.
전문모금기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합니다.
사회복지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합니다.
어린이집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단체 포함)을 말합니다.
학교(유치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단체 포함)을 말합니다.
의료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합니다.
「민법」상 비영리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법인을 말합니다.
비영리외국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비영리외국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법인 말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법인 말합니다.
공공기관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법인을 말합니다.

2. 기부금의 수입·지출 명세  
 - ⑩란에는 사업연도 개시월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를 차례대로 적습니다(앞쪽의 ⑩란은 사업연도(1월~12월) 법인 예시)  
 - ⑪란과 ⑫란은 월 누계액을 적습니다.  
 - 합계란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전체 수입 및 지출 금액을 적습니다.
3.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 국내사업 관련 ○○지원사업(장학금지급 등), 일반관리비, 기금조성비(정기예금 또는 적금 등), 그 밖의 비용(구체적인 내용 기재) 등 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 지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매월 같은 목적으로 동일한 사람에게 유사한 금액을 지급한 비용은 ⑬ 지출월란에 적지 않고 ⑭ 연도별란에 적을 수 있습니다.  
 - ⑩란은 연간 지급목적별 지출명세를 작성합니다. 다만, 1개 단체에 연간 1백만원 이상 지급한 경우 해당 단체명, 지급목적, 수혜인원, 금액을 별도로 적습니다.  
 - ⑫란 수혜인원은 연간 지급한 실제 인원을 적습니다. 예시) 10명에게 10만원씩 2회 장학금을 지급한 경우 수혜인원은 10명으로 적습니다.  
 \* 예시(장학금 지급: 10명에게 10만원씩 1월, 2월에 각각 지급, 복지단체 지원: A 복지단체에 2월에 1,000만원, 1회 지원(수혜인원 50명))

지출월	지급목적	지급건수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1월	장학금 지급	10	김우수 외	1,000,000
2월	장학금 지급	10	김우수 외	1,000,000
2월	복지단체 지원	1	A복지단체	10,000,000
∴	∴	∴	∴	∴
연간	지급목적	수혜인원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2013년	장학금 지급	10	김우수 외	2,000,000
	복지단체 지원	50	A복지단체	10,000,000
합 계		63		12,000,000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 대표 지급처명은 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 구분된 지급처 중 가장 큰 대표 지급처를 적으며,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빈칸으로 두되, 그 지급금액과 지급목적은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4.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외사업)  
 - 국외사업이 있는 공익법인등은 국가별 지출명세를 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 지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 ⑩란은 해당 연도의 국가별, 지급목적별 지출명세를 작성합니다. 다만, 1개 단체에 연간 1백만원 이상 지급한 경우 해당 단체명, 지급목적, 국가명, 수혜인원, 금액을 별도로 적습니다.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참고**

**결산서류 등 간편서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2서식] <개정 2023. 3. 20.>

###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간편서식

\* 제2쪽 및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4쪽 중 제1쪽)

**1. 기본사항**  
 사업연도(과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 정기공시 [ ] 해산공시

① 공익법인등 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③ 대표자      ④ 설립연월일  
 ⑤ 소재지      ⑥ 전화번호/팩스      /  
 ⑦ 홈페이지 주소      ⑧ 전자우편주소  
 ⑨ 주무관청      ⑩ 기부금 유형      [ ] 특례기부금 [ ] 일반기부금 [ ] 기타  
 ⑪ 설립근거법  
 ⑫ 설립유형      [ ] 재단법인 [ ] 사단법인 [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 공공기관 [ ] 기타  
 ⑬ 공익사업유형  
 ⑭ 설립주체      [ ] 개인 [ ] 기업 [ ] 개인·기업 [ ] 국가 [ ] 지방자치단체 [ ] 기타  
 ⑮ 이사 수      명      ⑯ 자원봉사자 연인원 수      명  
 ⑰ 고용직원 수      명

**2. 자산 및 부채현황** (단위: 원)

구분	⑬ 자산소계	⑭ 자산				⑮ 부채
		⑰ 토지	⑱ 건물	⑲ 주식 및 출자지분	⑳ 금융자산	
㉒ 총계 (a=b+c)						
a 총계 (a=b+c)						
b 공익목적사업						
c 기타사업						

**3. 수익현황** (단위: 원)

구분	㉕ 총계	㉖ 사업수익					㉗ 사업외수익	㉘ 공익목적사업 준비금 환입액
		㉙ 소계	㉚ 기부금	㉛ 보조금	㉜ 회비수익	㉝ 기타		
㉒ 총계 (a=b+c)								
b 공익목적사업								
c 기타사업								

**4. 비용현황** (단위: 원)

구분	㉕ 총계	㉖ 사업비용				㉗ 사업외 비용 등 기타	㉘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전입액
		㉙ 소계	㉚ 사업 수행비용	㉛ 일반 관리비용	㉜ 모금 비용		
㉒ 총계 (a=b+c)							
b 공익목적사업							
c 기타사업							

**5. 확인란**  
 본인은 본 결산서와 결산서에 첨부된 명세 및 보고서들을 검토하였으며, 해당정보를 진실하고 성실 하게 작성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대표자 :      확인일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5에 따라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 등을 공시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210mm×297mm[백상지 80g/㎡]

작성방법

- \* 이 서식은 결산서류 등의 공시대상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1조,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인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 \* 이 서식을 작성할 때는 통합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 작성을 위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후의 금액을 적습니다.

1. 기본사항

- 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에 대하여 공시하는 경우 "해산공시"에, 그 외의 경우 "정기공시"에 √ 표를 합니다.
- 나. "⑨주무관청"란은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허가한 주무관청 명칭을 적고, 주무관청으로부터 공익법인등을 관리, 감독 권한을 위임 받은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 받은 기관의 명칭을 괄호에 적습니다.
  - (예) 교육청의 관리 감독을 받는 장학재단인 경우 교육부(교육청), 서울특별시의 관리 감독을 받는 종교법인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장), 주무관청이 없는 단체의 경우 관할세무서를 주무관청으로 적습니다.
- 다. "⑩기부금 유형"란은 해당 공익법인인 사립학교, 국립대학병원 등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 또는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대상인 경우 "특례기부금"에, 사회복지·문화·교육·종교 등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 또는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대상인 경우 "일반기부금"에, 그 밖의 경우 "기타"에 √ 표를 합니다.
- 라. "⑪ 설립근거법"란은 다음 중에서 해당하는 법률 등을 선택하여 모두 적습니다.

- 1) 「민법」, 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3) 「사회복지사업법」, 4) 「사립학교법」, 5) 「의료법」, 6) 「협동조합 기본법」, 7) 그 밖의 법률, 8) 해당 없음

- 마. "⑫설립유형"란은 해당되는 단체유형에 √ 표를 합니다.
  - 「민법」이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란에 √ 표를 합니다.
  - 「국채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 표를 합니다.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 표를 합니다.
  - 위에 해당하지 않는 공익법인등은 기타에 √ 표를 합니다.
- 바. "⑬공익사업유형"란은 1. 교육, 2. 학술, 3. 장학, 4. 사회복지, 5. 의료, 6. 예술·문화, 7. 종교, 8. 기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 사. "⑭설립주체"란은 설립주체(기본재산 출연자)에 √ 표를 합니다.
  - \* 설립주체
    - (개인) 개인 또는 가족이 설립한 단체, (기업) 기업이 설립한 단체, (개인·기업) 개인과기업이 동일한 출연금으로 설립한 단체
    - (국가) 국가(정부) 및 공공기관이 설립한 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단체
    - (기타) 그 밖의 주체가 설립한 단체
    - 개인과 기업이 함께 출연하여 설립한 경우에는 개인출연금인 기업출연금보다 크면 "개인"을, 기업출연금이 개인출연금보다 크면 "기업"을 선택합니다.
  - 아. "⑮이사 수"란은 사업연도 말 현재 이사회 구성원(등기사항증명서상 이사)인 이사 수를 적고, 법인이 아닌 단체는 정관의 요건을 충족한 이사의 수를 적습니다.
  - 자. "⑯자원봉사 연인원 수"란은 자원봉사자 연인원을 적습니다.
    - (예) 1명의 자원봉사자가 365일 봉사활동을 수행했을 경우, 1\*365=365명
  - 차. "⑰고용직원 수"란은 공익법인 등의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을 포함한 정규직 및 비정규직의 상시 인원을 합하며, 일용직은 제외합니다)를 적습니다.
    - \* 연 평균 상시근로자 수: (매월 말 상시 고용직원 수 합계 / 사업연도 월수)

2. 자산 및 부채현황

- 가. "⑱자산소계-⑳부채"란은 사업연도(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상태표상 자산 및 부채가액을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 "공익목적사업"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을 말합니다
    - (예) 문화·예술 전시사업, 연주회 등 공익목적으러하는 사업의 임차료 수익 등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이지만 공익목적사업부문으로 구분합니다.
  - \* "기타사업"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말합니다.

- \* 공익목적사업 부문과 기타사업 부문 구분 시 참고사항
  - 정관에 기재된 사업이어도 공익목적활동으로 볼 수 없는 사업은 기타사업부문으로 구분하며, 공익목적활동의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이더라도 기념품 판매, 카페 운영, 금융소득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금융자산 투자 등은 기타사업부문으로 구분합니다.

작성방법

- 나. "㉑주식 및 출자지분"란은 공익법인등이 보유한 주식(보통주, 우선주 포함)이나 출자지분의 재무상태표상 가액을 적습니다.
- 다. "㉒금융자산"란은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보통예금, 당좌예금, 취득 시 만기가 3개월인 금융상품)과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고 있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펀드상품, 저축성 보험상품 등 및 국제, 회사채등 유가증권(㉓주식 및 출자지분 제외)의 재무상태표상 가액을 적습니다. 정기예금 등에서 발생한 미수이자(미수입대료, 선급금 등 ㉔부터 ㉕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를 적습니다.

3. 수익현황(해당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공익법인등의 운영성과표(손익계산서)상 사업수익과 사업외수익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가. "㉖기부금"란은 개인이나 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현금 및 현물 기부금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를 공익목적사업에 적습니다.
    - \* (예) 00모금회로부터 수령한 지원금, 학교 설립자가 해당 연도에 출연한 재산금액
  - 나. "㉗보조금"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과 같은 보조사업자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적습니다.
    - \* 보조사업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
  - 라. "㉘회비수익"란은 공익법인등이 회원을 대상으로 받는 회비를 적습니다. 회원을 대상으로 발생하지만 일반적인 매출(재화·용역 제공) 거래는 회비수익이 아닙니다.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이지만 납부에 따른 혜택이 없거나, 납부가 강제되더라도 없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주는 경우에는 명목상 회비일 뿐 기부금과 동일한 성격이므로 "㉙기부금"란에 적습니다.
  - 마. "㉚기타"란은 기부금, 보조금, 회비수익 외의 사업수익을 적습니다.
  - 바. "㉛사업외수익"란은 사업수익이 아닌 수익 또는 차익으로서 운영성과표(손익계산서)에 사업외수익으로 기재되는 유형·무형 자산처분이익, 유형·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전기오류수정이익 등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사. "㉜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란은 「법인세법」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법인세법」에 따라 수익사업부문에서 고유목적사업부문에 전출되어 목적사업에 사용된 금액과 미사용되어 임의 환입된 금액을 합하여 적습니다.

4. 비용현황

- 공익법인등의 운영성과표상의 사업비용, 사업외비용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을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가. "㉝사업수행비용"란은 공익법인등이 추구하는 본연의 임무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혜자, 고객, 회원 등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적습니다.
  - 나. "㉞일반관리비용"란은 공익법인등의 기획, 인사, 재무, 감독 등 제반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적습니다.
  - 다. "㉟모금비용"란은 공익법인등의 모금 홍보, 모금 행사, 기부자 리스트 관리, 모금 고지서 발송 등의 모금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적습니다.



6. 공익목적사업 세부현황

①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 현황

② 사업내용 (중복체크 가능)

[ ] 문화예술(코드1100) [ ] 스포츠(코드1200) [ ] 기타 레크리에이션 및 봉사 클럽(코드1300)  
 [ ] 초등 및 중등 교육(코드2100) [ ] 고등교육(코드2200) [ ] 기타교육(코드2300) [ ] 학술연구(코드2400)  
 [ ] 장학(코드2500) [ ] 영유아보육(코드2600)  
 [ ] 병원 및 재활시설(코드3100) [ ] 요양원(코드3200) [ ] 정신 건강 및 위기개입(코드3300)  
 [ ] 기타 보건서비스(코드3400)  
 [ ] 사회복지(코드4100) [ ] 긴급상황 및 구조(코드4200) [ ] 소득 지원 및 보존(코드4300)  
 [ ] 환경(코드5100) [ ] 동물(코드5200)  
 [ ] 경제, 사회 및 지역사회개발(코드6100) [ ] 주거(코드6200) [ ] 고용 및 훈련(코드6300)  
 [ ] 시민 및 옹호단체(코드7100) [ ] 법률 및 법률서비스(코드7200) [ ] 정치단체(코드7300)  
 [ ] 배분(지원) 재단(코드8100) [ ] 봉사증진(코드8200) [ ] 모금활동(코드8300)  
 [ ] 국제활동(코드9100)  
 [ ] 종교단체 및 종교 관련 단체(코드10100)  
 [ ] 비지니스연합(코드11100) [ ] 전문가연합(코드11200) [ ] 노동조합(코드11300)  
 [ ] 기타(코드12100)

③ 사업대상  
 [ ] 모두 해당, [ ] 아동, [ ] 청소년, [ ] 노인, [ ] 장애인, [ ] 외국인(다문화), [ ] 가족 · 여성,  
 [ ] 일반대중, [ ] 기타

④ 국내 주요 사업지역  
 [ ] 전국, [ ] 서울, [ ] 부산, [ ] 인천, [ ] 대전, [ ] 광주, [ ] 대구, [ ] 울산, [ ] 강원, [ ] 경기,  
 [ ] 경남, [ ] 경북, [ ] 충남, [ ] 충북, [ ] 전남, [ ] 전북, [ ] 세종, [ ] 제주, [ ] 해당 없음

⑤ 국외 주요 사업지역  
 [ ] 전세계, [ ] 유럽, [ ] 아시아, [ ] 북아메리카, [ ] 아프리카, [ ] 오세아니아, [ ] 남아메리카,  
 [ ] 해당 없음

⑥ 공익목적사업의 사업별 실적

1	코드	사업명	사업수행비용	원
사업내용			사업지역	
2	코드	사업명	사업수행비용	원
사업내용			사업지역	
3	코드	사업명	사업수행비용	원
사업내용			사업지역	
4	그 외 사업	개	사업수행비용	원
합 계	총 공익목적사업	개	사업수행비용 합계	원

작성방법

6. 공익목적사업 세부현황

- 가. "①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 현황"란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주요 업무, 실적 및 향후계획 등을 적습니다.
- 나. "②사업내용"은 공익법인등이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모두 √표를 합니다. 모금 후 모금액을 불특정 단체에 배분하거나 지원하는 경우는 "배분(지원) 재단(코드8100)"에 √표를 하고, 모금 후 모금액을 소수의 특정한 단체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모금활동(코드8300)"에 √표를 합니다. 사업내용은 중복체크가 가능합니다.
- (예) 재단이면서 사회복지단체를 지원하는 경우, "배분(지원) 재단"과 "사회복지" 모두 √표를 합니다.
- 다. ③부터 ⑥까지 [ ]에는 공익법인등이 실제로 수행하는 사업의 사업대상, 국내 주요 사업지역, 국외 주요 사업지역에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를 합니다.
- 라. ⑥란은 공익목적사업의 사업별 실적(사업명, 사업수행비용, 사업내용, 사업지역)을 적습니다. 코드는 "②사업내용"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공익법인등이 수행하는 사업이 3개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비용이 많은 3개 사업의 사업실적은 별도로 적고, 나머지는 "그 외 사업"에 합산하여 적습니다.
- 마. ⑥란의 사업수행비용 합계는 제1쪽 "4. 비용현황"의 사업수행비용 총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참고8 공익법인 지정추천 신청 (홈택스 접근경로)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법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가능

\* 홈택스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공익법인 지정추천 신청」



참고9

공익법인 공시 시스템 (홈택스 접근경로)

■ 홈택스(www.hometax.go.kr) > 세금종류별 서비스 > 공익법인종합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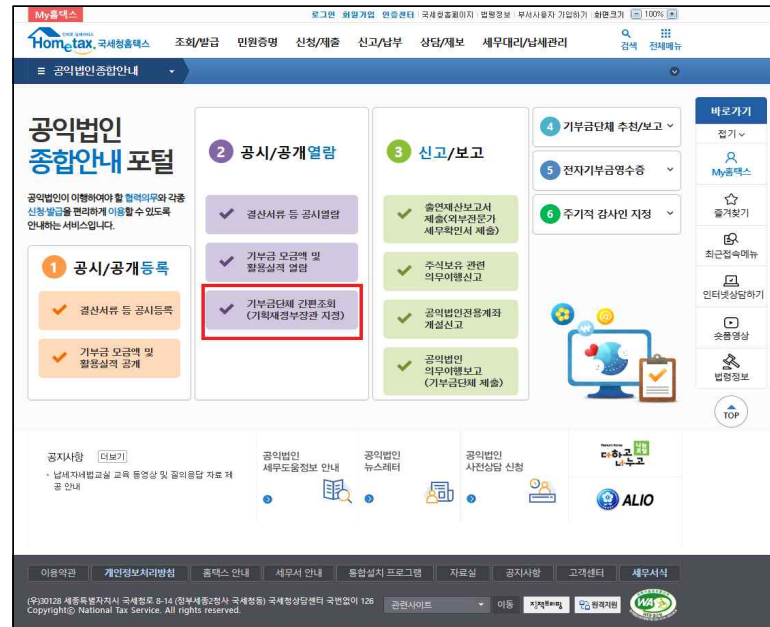
참고10

지정결과 조회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홈택스]

■ 기획재정부(www.moef.go.kr) > 법령 > 고사공고지침 > 고시 > 공익법인등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



■ 홈택스(www.hometax.go.kr) > 세금종류별 서비스 > 공익법인종합안내 > 기부금단체 간편조회



## IV.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역별 제도 운영 현황

2023 전문예술법인·단체 경영 활성화 지원  
제도 담당 지자체 공무원 워크숍 자료집

## 1. 지역별 제도 운영 현황

### 1) 지역별 운영 현황

2001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정을 시작으로 하여 2023년 8월 현재까지 17개 광역시도에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표 4. 각 지역별 제도 운영 연혁 |

연번	지정권 / 지역명	최초지정일자
1	문화체육관광부	2001. 06. 15
2	서울특별시	2001. 12. 31
3	경기도	2005. 01. 01
4	인천광역시	2003. 11. 01
5	대전광역시	2002. 06. 25
6	세종특별자치시	2016. 11. 15
7	충청북도	2004. 02. 20
8	충청남도	2011. 10. 04
9	강원특별자치도	2002. 08. 09
10	광주광역시	2001. 12. 18
11	전라북도	2002. 12. 01
12	전라남도	2010. 02. 22
13	부산광역시	2003. 04. 01
14	대구광역시	2002. 03. 30
15	울산광역시	2008. 01. 01
16	경상북도	2010. 01. 18
17	경상남도	2001. 12. 31
18	제주특별자치도	2002. 02. 09

## 2) 지역별 공고 및 지정 시기

17개 지자체별로 각기 다른 공고·지정 시기를 정해 운영되고 있으며, 지정횟수는 기본적으로 1년 1회이나 일부 지역에 한해 지정횟수를 달리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별도의 지정 신청을 받지 않음

| 표 5. 지역별 공고 및 지정 시기 |

지역	지정횟수	공고시기	지정시기
서울특별시	1년 1회	9월	11월
경기도	1년 1회	10월	1월
인천광역시	1년 1회	10월	12월
대전광역시	1년 1회	9월	9월
세종특별자치시	1년 1회	10월	12월
충청북도	1년 1회	10월	12월
충청남도	1년 1회	12월	2월
강원도	1년 1회	11월	12월
광주광역시	1년 1회	10월	12월
전라북도	1년 1회	10월	12월
전라남도	1년 1회	2월	4월
부산광역시	1년 1회	7월	11월
대구광역시	1년 1회	4월	5월
울산광역시	2년 1회(짝수해)	1월	2월
경상북도	수시 모집		
경상남도	1년 1회	10월	12월
제주특별자치도	1년 1회	9월	11월

## 2. 2023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현황(2022년 12월 31일 기준)

### 1) 전체 지정현황

2022년 12월 기준으로 지정이 유효한 전문예술법인·단체는 총 1,669개로 파악되었다.

| 표 6.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전체현황 |

2022. 12. 31. 기준

지역/ 지정권자	합계	법적형태				지정유형	
		임의단체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전문예술단체	전문예술법인
문화체육관광부	23	0	2	20	1	0	23
서울특별시	301	175	89	36	1	176	125
부산광역시	145	104	36	5	0	104	41
대구광역시	102	80	15	7	0	80	22
인천광역시	59	35	20	4	0	35	24
광주광역시	82	50	30	2	0	50	32
대전광역시	57	38	14	3	2	38	19
세종특별자치시	18	14	2	1	1	14	4
울산광역시	42	38	1	1	2	39	3
경기도	146	97	24	24	1	97	49
강원특별자치도	123	70	40	12	1	70	53
충청북도	39	30	7	2	0	30	9
충청남도	63	34	23	6	0	33	30
전라북도	64	31	26	7	0	31	33
전라남도	92	64	24	4	0	65	27
경상북도	31	18	8	5	0	18	13
경상남도	257	200	48	8	1	205	52
제주특별자치도	25	16	8	1	0	16	9
합계	1,669	1,094	417	148	10	1,101	568

## 2) 지자체별 지정현황

2022년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소재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상권이 가장 많은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 표 7. 지역별 지정현황 |

2022. 12. 31 기준

지역	합계(개)	비율(%)	지역	합계	비율(%)
중앙	23	1.38%	문화체육관광부	23	1.38%
수도권	506	30.32%	서울특별시	301	18.03%
			경기도	146	8.75%
			인천광역시	59	3.54%
충청권	177	10.61%	대전광역시	57	3.42%
			충청북도	39	2.34%
			충청남도	63	3.77%
			세종특별자치시	18	1.08%
강원도	123	7.37%	강원특별자치도	123	7.37%
전라권	238	14.26%	광주광역시	82	4.91%
			전라북도	64	3.83%
			전라남도	92	5.51%
경상권	577	34.57%	부산광역시	145	8.69%
			대구광역시	102	6.11%
			울산광역시	42	2.52%
			경상북도	31	1.86%
			경상남도	257	15.40%
제주권	25	1.50%	제주특별자치도	25	1.50%
<b>합계</b>	<b>1,669</b>	<b>100.00%</b>	<b>합계</b>	<b>1,669</b>	<b>100.00%</b>

## 3) 법적 유형별 현황

2022년 전문예술법인단체를 법적 유형별로 살펴보면 임의단체가 전체의 65.55%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는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24.99%, 재단법인 8.87%, 사회적협동조합 0.6%로 총 34.45%를 차지하고 있다.

| 표 8. 법적유형별 지정현황 |

2022. 12. 31 기준

합계	합계(개)	비율(%)	법적유형			
			임의단체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합계(개)	1,669	100%	1,094	417	148	10
비율(%)			65.55%	24.99%	8.87%	0.60%

## 4) 사업유형별 현황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사업유형은 크게 공연예술분야, 시각예술분야, 기타분야로 구분하며, 상세분류는 다음과 같다.

| 표 9. 전문예술법인·단체 사업유형 분류기준 |

사업유형	주요 사업내용	
공연예술분야	<b>무용</b>	동서양의 고전무용 및 발레, 모던댄스 등 무용 기반 창작, 기획·제작 및 보존
	<b>연극</b>	연극, 뮤지컬, 마임 등 극예술 기반 창작, 기획·제작 및 보존
	<b>음악</b>	오페라, 합창, 오케스트라 등 서양 클래식음악 기반 창작, 기획·제작 및 보존
	<b>전통</b>	전래 또는 전통 공연양식 기반 창작, 기획·제작 및 보존
	<b>공연장 운영</b>	대관 등 공연장 운영 사업
	<b>기획/기획사</b>	공연상품 기획·제작 및 유통·판매
	<b>축제</b>	예술축제, 엑스포, 문화관광 지역축제 등
	<b>협회</b>	공연예술분야 협회
	<b>복합·다원</b>	복합예술, 다원예술 기반 창작, 기획·제작 및 보존
	<b>기타</b>	공연예술분야 교육 등
시각예술분야	<b>전시행사</b>	전시 등 시각예술분야 관련 사업
	<b>전시장 운영</b>	대관 등 전시장 운영 사업
	<b>협회</b>	시각예술분야 협회
기타분야	<b>지원기관</b>	시·도 출연 문화재단 및 문화예술 지원기관
	<b>협회</b>	기타분야 협회
	<b>기타</b>	영상, 예술교육 등

| 표 10. 사업유형별 지정현황 |

2022. 12. 31 기준

	합계	공연예술	시각예술	기타
합계(개)	1,669	1,279	146	244
비율(%)	100%	76.63%	8.75%	14.62%

참고 : 2022 전문예술법인·단체 운영현황 조사결과(2021년 기준)

1) 재정현황

「2022 전문예술법인·단체 백서」에 실린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수입현황을 살펴보면, 공공지원금의 비율이 81.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체수입 16.9%, 기부금 1.8% 순으로 나타났다. 지출현황은 경상운영비와 공연·전시 이외 사업비가 각각 36.3%로 가장 높았으며, 공연·전시 사업비는 20.3%로 조사되었다. 기부후원금의 경우, 기업기부금이 67.8%, 개인기부금이 32.2%로, 기업기부금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조사에 응답한 1,099개 전문예술법인·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7.1%로 조사되었다.

그림 1 수입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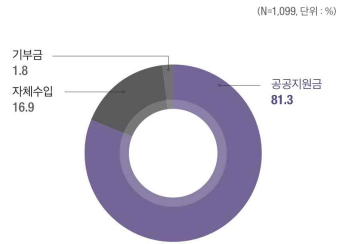


그림 2 지출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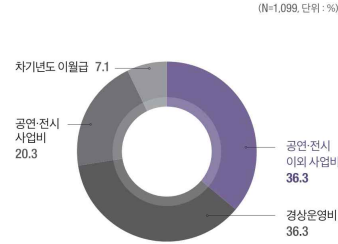


그림 3 기부금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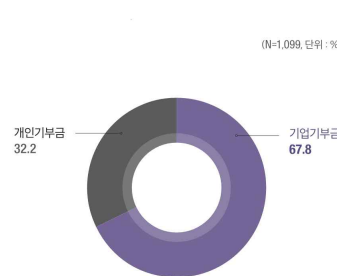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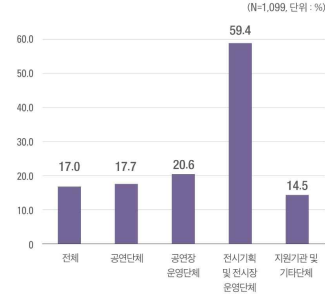


그림 4 재정자립도 현황



2) 활동실적 현황

「2022 전문예술법인·단체 백서」에 따르면, 공연실적이 있다고 응답한 887개 전문예술법인·단체의 공연실적을 살펴보면, 자체기획·제작 공연은 평균 10.6편, 행사참가·초청 공연은 평균 6.4편, 대관공연은 평균 33.9편으로 나타났다. 전시실적이 있다고 응답한 276개의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전시실적의 경우, 자체 기획·제작 전시는 평균 6.6편, 행사참가·초청 전시는 평균 8.1편, 대관전시는 평균 22.6편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5 공연실적 현황(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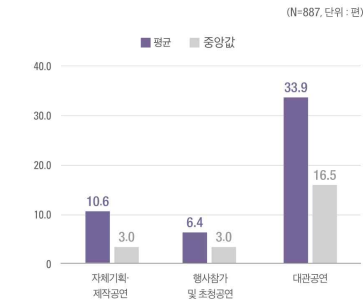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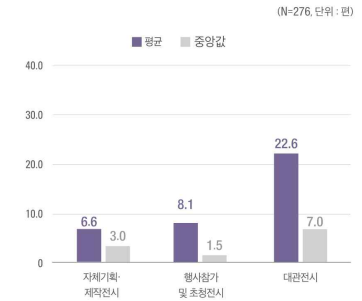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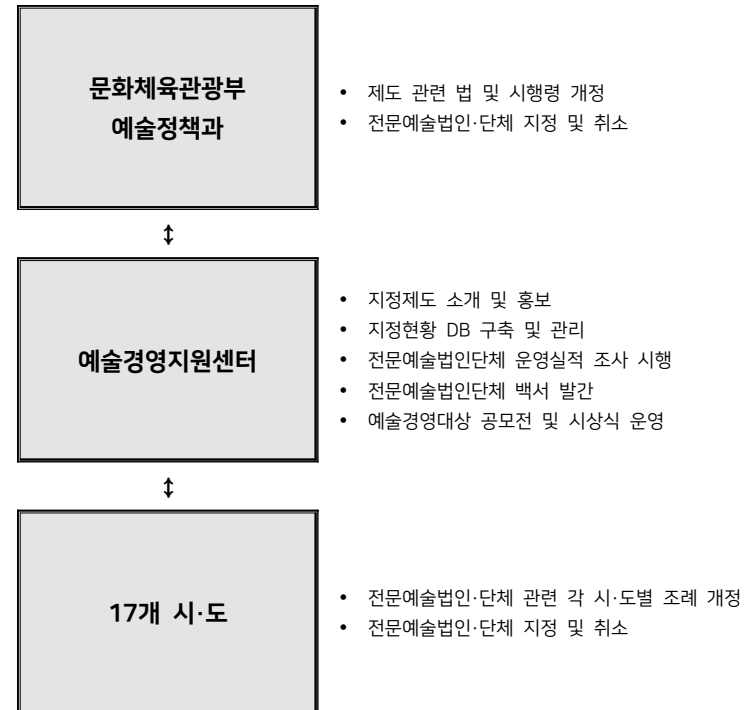
그림 6 전시실적 현황(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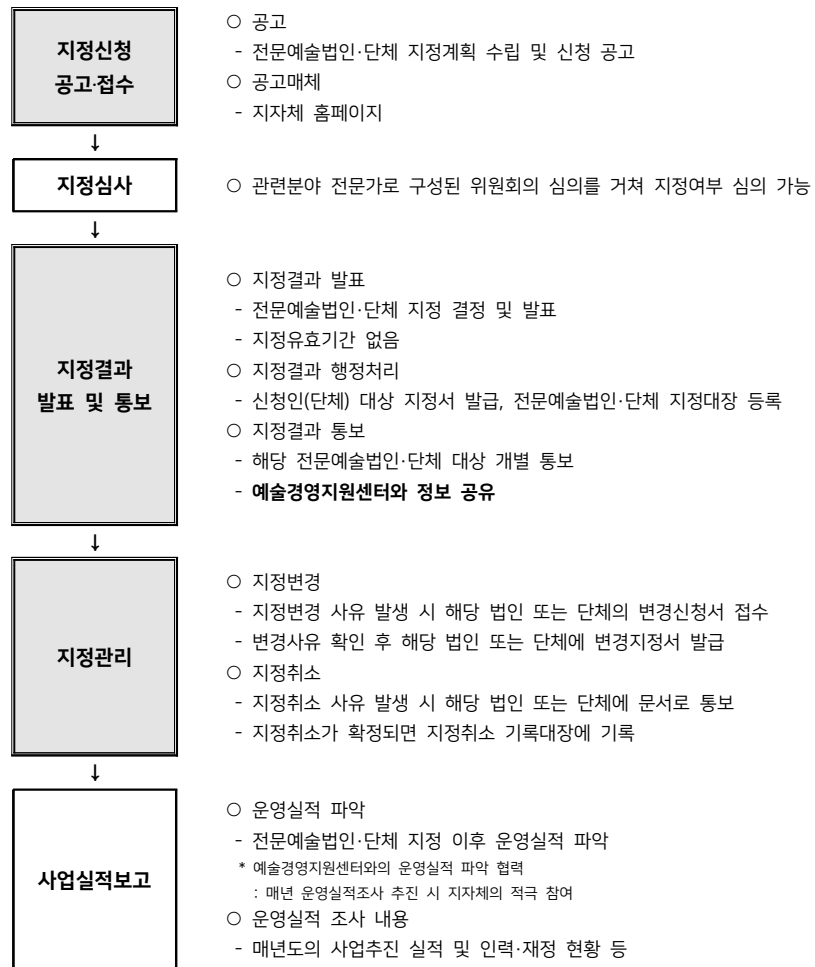
## V. 업무 프로세스별 제도 운영 가이드

2023 전문예술법인·단체 경영 활성화 지원  
제도 담당 지자체 공무원 워크숍 자료집

### ■ 제도 운영 관련 협의체 간 주요 업무



## ■ 지정업무 흐름도(지자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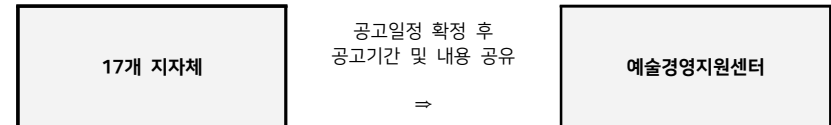
\*   의 경우, 예술경영지원센터와 정보 공유 필요

\* 기타 행정절차 관련 사항(공고기간, 취소 시 청문 등)은 「행정절차법령」 준용 처리

## ■ 업무 프로세스 별 운영 가이드

### 1) 지정신청 공고

- 공고기간 : 20일 간 게시(권고)
- 공고매체 :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 진행순서 : 지자체는 지정신청 공고일정 확정 후,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2) 지정신청 접수

- 지정신청 시 구비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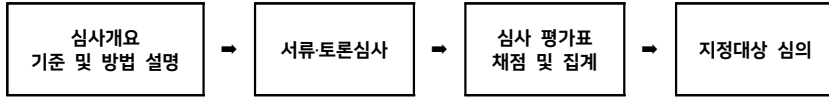
<b>필수 제출 서류</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서</li> <li>2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li> <li>3.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 조직·인력 운영 현황 자료1 부</li> <li>4. 사업계획서 1부</li> </ol>
<b>해당하는 경우</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고유번호증 사본 1부</li> <li>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li> <li>3. 박물관/미술관/공연장 등록증 사본 1부</li> </ol>

\*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통한 조치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받는 것을 추천함



### 3) 지정심사

- 심의위원회 구성 :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 심의 가능
- 심사진행절차(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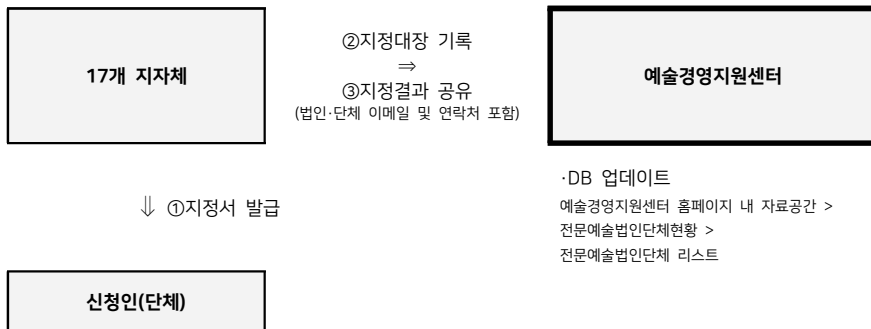


- 평가항목 및 참고사항(예시)

심사항목	참고사항
① 자격 여부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제2항 해당여부
② 조직·인력운영의 적정성	· 상근 임직원 확보 현황 · 예술단 운영단체의 경우, 단원 확보 현황 · 기획자, 무대예술인 등 전문 인력 확보 현황 등
③ 재정운영의 건전성	· 단체운영비 및 사업비 운용 건전성 등
④ 예술적 완성도	· 국내외 주요 경연대회 수상실적 등
⑤ 기타	· 문화예술단체로서의 목적사업의 적합성 · 지역사회에서 예술단체로서의 기여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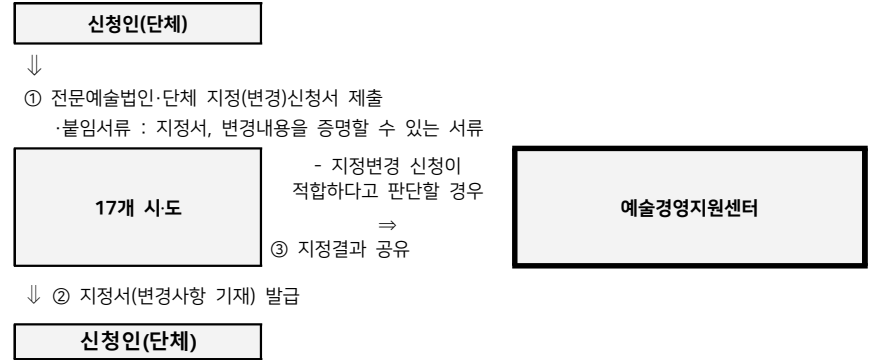
### 4) 지정결과 발표 · 통보

- 발표기간 : 연도 중
- 지정기간 : 지정유효기간 없음
- 지정결과 발표 후 행정처리
  - 17개 지자체는 지정결정(지정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도 같음) 후, 해당 법인 및 단체에게 지정서를 발급하고,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대장에 기록한 후 이를 예술경영지원센터에도 알려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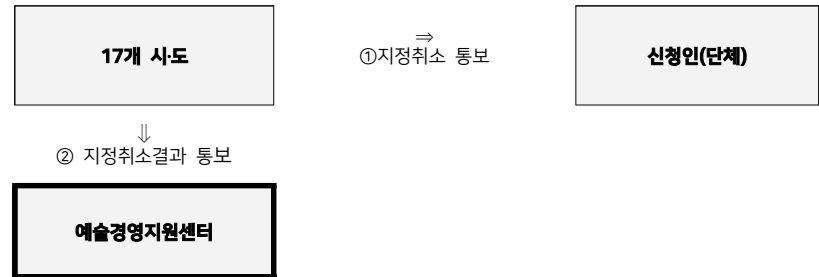
- 지정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 지정 변경 신청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서 교부 (17개 시도→신청한 전문예술법인·단체)
- 지정결과 송부 (17개 시도→예술경영지원센터)
  - 송부처 : 공문 및 이메일(consulting@gokams.or.kr)



-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지정취소 통보 (17개 시도 → 전문예술법인·단체)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취소 기록대장 기록
- 지정취소 공유 (17개 시도 → 예술경영지원센터)
  - 붙임서류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취소 기록대장
  - 송부처 : 공문 및 이메일(consulting@gokams.or.kr)



### 5) 운영실적 조사

- 운영실적 파악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이후 운영실적조사 참여
- 운영실적 조사내용 : 해당연도 사업실적 및 재정현황 등

---

## VI. 전문예술법인·단체 제도와 기부금 회계·세무 개요

---

2023 전문예술법인·단체 경영 활성화 지원  
제도 담당 지자체 공무원 워크숍 자료집

## 전문예술법인·단체 제도와 기부금 회계·세무 개요

한미회계법인 김소영회계사  
blpurge@hanmia.com

1

## 목차

1. 법인격과 사업자등록
2. 기부금품법과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3. 공익법인의 범위
4. 기부금 회계처리
5. 기부금세제

2

# 1.법인격과 사업자등록

구분	특징	사업자등록증 등	
법인격 없음	임의단체 (법인 아닌 단체)	• 법인설립 허가 없이 임의로 구성된 단체 • 세법상 "법인 아닌 단체"로 칭함	고유번호증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법인설립 허가를 얻지 않아 법인은 아니지만, 세법상 법인으로 간주함 • 즉, 민법상 법인은 아니지만, 세법상으로만 법인으로 보는 것임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법인격 있음	영리법인	• 통상적으로 주식회사로 설립됨(그 외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 협동조합 포함(단,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	사업자등록증
	비영리 법인	사단법인 일정 인원으로 구성되어 법인설립 허가를 얻음(연합회, 총회, ...사람들 등)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법인	재단법인 일정 재산으로 구성되어 법인설립 허가를 얻음	사업자등록증
개인사업자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됨	사업자등록증	

3

# 1.법인격과 사업자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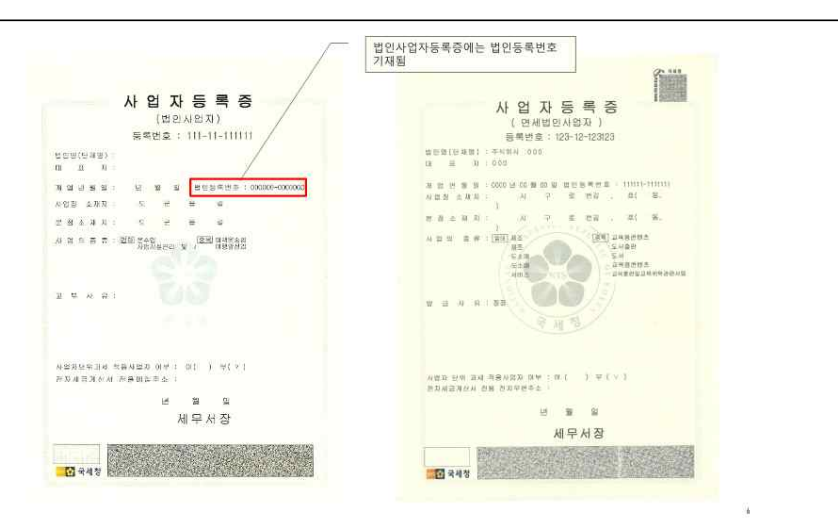
구분	사업자등록 유형	내용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 개인사업자이면서 부가가치세 과세됨. 과세 매출에 대해 <b>세금계산서 발급</b> • 과세사업, 면세사업 결정하는 경우 <b>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급</b>
	과세사업자	간이과세자 • 개인사업자이면서 일정 중점 시(최저연도 공급대가 8,000만원 미만) 간이과세 선택가능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라는 점에서는 일반과세자와 동일, 각종 납세의무가 간소화 또는 면제 • <b>세금계산서 발급 가능(다만,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발급 불가)</b> • 면세사업 결정하는 경우 계산서 발급 가능
	면세사업자	• 개인사업자이면서 부가가치세 면세됨. 면세 매출에 대해 <b>계산서 발급</b>
법인사업자	과세사업자	• 법인사업자이면서 부가가치세 과세됨. 과세 매출에 대해 <b>세금계산서 발급</b> • 비영리법인(사단, 재단)도 수익사업 유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음 • 법인사업자에게는 간이과세 제도 없음 • 과세사업, 면세사업 결정하는 경우 <b>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급</b>
	면세사업자	• 법인사업자이면서 부가가치세 면세됨. 면세 매출에 대해 <b>계산서 발급</b>
고유번호증	해당없음	• 고유번호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사업자가 아님 •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 면세 구분 자체가 불가능 • 사업자가 아니므로 <b>세금계산서, 계산서 발급 불가, 전자출근도 모두 발급 불가</b>

5

# 1.법인격과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번호 부여체계
  - 01~79: 개인 과세사업자
  - 90~99: 개인 면세사업자
  - 81,86,87,88: 영리법인(본점)
  - 82: 비영리법인 본·지점(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
  - 83: 국가, 지자체, 지자체조합
  - 84: 외국법인
  - 85: 영리법인의 지점
  - 80: 임의단체(고유번호 부여)
  - 89: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4



4



## 2. 기부금품법과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 ·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로청")에게 등록하여야 함
  1. 모집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모집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2.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와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계획. 이 경우 모집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3.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조달방법,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금품 사용계획
  4. 모집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품의 모집에 필요한 사항

## 2.기부금품법과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 1. 기부금품법 적용대상

가. **불특정 다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통해서만 모집이 가능하며, 모집완료 보고, 사용완료 보고, 모집 및 사용 내역 공개 등의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기부금품법상 불특정 다수라는 표현은 없으나, 행안부 모집제도 해설서에 언급

출처: 기부금품 모집제도 해설서, 행안부, 2012.1

11

## 2.기부금품법과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제도

· 현행 법령상 **영리법인**은 지정 불가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시·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이하 "전문예술법인·단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3.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4.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13

## 2.기부금품법과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 ·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는 동법을 적용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음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기저금법」
2. 「결핵예방법」
3. 「보훈기금법」
4. 「문화예술진흥법」(하략)

### · 문화예술진흥법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

①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12

## 2.기부금품법과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제도

■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4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이하 "전문예술법인·단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 5.>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의 조직·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삭제 <2021. 1. 5.>(삭제 전 최근 2년간의 공연·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전시시설의 운영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4

## 2.기부금품법과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제도

#### ■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4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한다.  
<개정 2021. 1. 5.>

1. 조직·인력 운영의 적정성
2. 재정 운영의 건전성
3. 공연·전시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수행 능력 또는 공연·전시시설의 운영 능력
4. 공연·전시된 작품의 예술적 완성도
5.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지정 신청 기한, 지정 주기, 현장실사 여부 등은 지자체마다 상이

15

## 2.기부금품법과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 기부금품법 제3조 관련, **기부금품법 전체**를 적용받지 않는 것인지, **모집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받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해석 상이
- 기부금품 모집제도 관련 행정안전부 발간자료(2012.01)에서는 기부금품법 제3조 규정과 관련, 기부금품 모집방법 등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이나, 각 법률이 기부금품법을 보완하여 모금의 방법 및 절차, 사용·배분 등을 규정한 경우 등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언급
-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공식 의견을 받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설사 법률 전체를 적용 받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오더라도, 기부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

17

## 2.기부금품법과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 ·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사전등록 규정 외에도 사용 목적, 모집비용 총당비율, 공개의무, 회계감사의무 등을 규정

#### ○ 제12조(기부금품의 사용)

①모집된 기부금품은 제13조에 따라 모집비용에 상당하는 경우 외에는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기부금품의 모집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모집된 기부금품을 그 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 ○ 제13조(모집비용 총당비율)

모집자는 모집된 기부금품의 규모에 따라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10~1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부금품의 일부를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에 총당할 수 있다.

#### ○ 제14조(공개 의무와 회계감사 등)

①모집자와 모집총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상황과 사용명세를 나타내는 장부·서류 등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모집자가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때,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하거나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모집자가 기부금품의 사용을 끝낸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상황과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모집된 기부금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1억원)이면 감사보고서의 첨부 생략할 수 있다.

16

## 2.기부금품법과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 2. 기부금품법 적용 제외 대상(법 제3조)

정치자금법, 결핵예방법, 보훈기금법, 문화예술진흥법,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재해구호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한국상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 등 10개의 법률에 의한 기부금품 모집에 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기부금품 모집방법 등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나, 당해 법률이 기부금품법을 보완하여 모금의 방법 및 절차, 사용·배분 등을 규정한 경우 등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

출처: 기부금품 모집제도 해설서, 행안부, 2012.1

18



### 3.공익법인의 범위

- 세무상 기부금단체의 종류: **공익법인, 공익단체**
-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으로 법정·지정기부금단체, 기부금대상 민간단체라는 용어 삭제
- 세무상 기부금단체가 아니더라도 기부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 세무상 기부금단체만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하고, 기부자도 기부금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기부금단체 외 단체가 기부금영수증 발급하더라도 기부자에게는 무의미

19

### 3.공익법인의 범위

- 공익법인(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 국세청장(관할 세무서장)에 신청 → 기재부에 지정 추천 → 기재부 지정·고시
- 분기별로 지정하여 고시, 연중에 지정받더라도 지정연도의 **1월 1일부터 지정효력 소급**
- 최초 지정 시 3년간 효력, 재지정부터 6년간 효력

21

### 3.공익법인의 범위

- 공익법인(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 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29

### 3.공익법인의 범위

- 공익법인(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
- 법적형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즉,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만 신청 가능

31

### 3.공익법인의 범위

#### 공익법인 지정추천 절차

- (추천신청) 비영리법인 등은 지정추천 구비서류와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어 관할세무서(법인소재지)에 **지정보고서** 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전월 10일까지** 신청서류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 (지정추천) 관할세무서는 서류구비 및 지정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전월 10일까지 기획재정부로 지정추천하며, 기획재정부에서 최종심사하여 매분기별 지정·고시합니다.



\* 2021.11. 이후 지정하는년부터 지정추천업무 이관 (영도관청 - 국세청)

< 분기별 신청기간 >

구분	신청기간	추천기간	지정·고시
1분기	인월도10/11 ~ 월해연도1/10	2/10	3/31
2분기	당해연도1/11 ~ 4/10	5/10	6/30
3분기	당해연도4/11 ~ 7/10	8/10	9/30
4분기	당해연도7/11 ~ 10/10	11/10	12/31

#### 신청서 구비서류

- 공익법인등 추천 신청서(별지 제63호의5 서식)
  - 법인설립허가서**  
\*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등특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
  - 정관**(사정요건 ①~③ 내용 반드시 포함)
  - 최근 3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영입 후 1년 미만 법인은 결산서 대신 직전 월까지의 결별 수입지출 내역서로 제출 가능)
  - 항후 3년(재지정신청의 경우 5년)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 공익법인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별지 제63호의6 서식)
  - 기부금 무급 및 자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
  - 신거문종 사성 여부 확인서(임의사시이나, 신거문종여부 확인을 위해 제출 필요)
- ※ 신규신청사: ①~⑥ 제출 / 재지정 신청사: ①~⑤, ⑦ 제출

#### 신청방법

- (홈택스) 홈택스를 통한 전자 접수  
\* 홈택스([www.hometax.go.kr](http://www.hometax.go.kr)) <=> 신청/재청 -> 신청영문 -> 공익법인 지정추천 신청
- (방문/우편) 관할세무서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접수  
\* 관할세무서 찾기: 국세청 누리집([www.nst.go.kr](http://www.nst.go.kr)) <=> 국세청 소개 > 전국 세무관서

#### 지정기간

- (신규)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
- (재지정) 지정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 재지정되는 경우 재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 3.공익법인의 범위

#### 신청대상 법인

- 다음의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민법상 비영리법인**·비영리외국법인·사회적협동조합·공공기관(공기업 제외)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이 신청 가능합니다.

#### 지정요건

- 다음 구분에 따라 정관내용이 요건을 충족할 것
  - \* (민법상 비영리법인등) **수입의 공익목적 사용 및 수혜자가 불특정다수일 것** \* (비영리외국법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 목적 추구함
  -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제9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중 어느 하나 수행
  - (공공기관 / 법률에따라직접 설립한기관) 설립목적이 사회복지·자선·문화·예술·교육·학술·상각 등 공익목적 활동 수행
- 신청서 진여재신이 국가·지자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원에 귀속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된 것**
-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며, 국민권익위/국세청/우무관청 등의 홈페이지 중 1개 이상의 곳에 법인의 홈페이지에 연결되어 있을 것
- 공익법인 등 또는 그 대표자 영리목적 공익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 지정취소된 경우 지정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것

### 3.공익법인의 범위

#### 법인격 없는 단체, 개인사업자는 공익법인으로 신청 불가

- 예) 고유번호증만 있는 임의단체
- 이 경우 「문화예술진흥법」에 다른 전문예술 **단체**로 지정받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전문예술 **단체**에 문화예술진흥 목적으로 기부할 경우 일반기부금(구, 지정기부금)에 해당

#### 공익목적 기부금(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음)

-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 3.공익법인의 범위

저장기부금의 범위(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번호	기부금
1	삭 제 <2018.3.30.>
2	삭 제 <2018.3.30.>
3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취약지역에서 비영리법인이 행하는 의료사업의 사업비·시설비·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4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5	「전쟁기념사업회법」에 따른 전쟁기념사업회에 전쟁기념관 또는 기념탑의 건설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6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또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출연하는 기부금
7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연수원 및 중소기업제품전시장의 건설비와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34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른 <b>전문예술단체</b> 에 문화예술진흥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77

### 3.공익법인의 범위

- 공익법인 지정 효과
- 법인세법 및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이하 "상증법")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됨
-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 홈텍스 공익법인 공시시스템에 결산서류 등 공시하여야 함
  - 최근 정의면 사태 등으로 **공익법인 공시서류에 대한 국제경 모니터링 강화 추세**
- 공익법인으로 지정되는 것으로 기부금이 증가하는 것은 아님
- 공익법인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1천만원 이상** 기부금을 모집하려면 기부금품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 다만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의미 있음
  - 미지정 단체와의 차별성
  - 공익법인으로서 출연받은 재산(기부금)에 대해 상속·증여세 면제됨(후술)

78

### 3.공익법인의 범위

#### ※ 신청대상 유의사항

[1] 그동안 법령 등에 의해 기부금단체로 인정되었던 아래의 단체는 2021년부터 지정추진 절차를 통해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법인세법상 공익법인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아래 1, 2 단계가 후진신청(~22.2.3까지) 후 기재부 지정고시(22.3.31)된 경우 2021년부터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며, 그 외 2022년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2022.10.10까지 관할세무서로 신청하여야 함

1. 2018.2.13.전에 인허가 받은 **학술연구·정학기술진흥 **문화예술** 환경단체**
2. 2018.2.13.전에 (구)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2**로 지정됐던 기부금단체
3. 2018.1.1.전에 (구)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7**로 지정됐던 단체 중 지정기한이 만료되는 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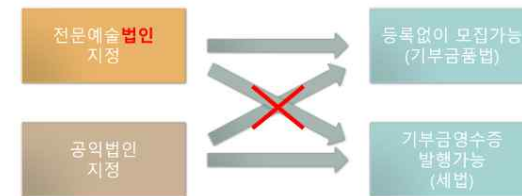
\* 2021년에 신청 시 1번은 신규신청, 2,3번은 재지정신청에 해당함

[2] 법인세법에서 별도 규정된 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추진 신청을 하지 않아도 관련규정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구)법정기부금단체),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다목(구)당연 지정기부금단체),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공익목적 기부금 범위)을 적용받는 경우

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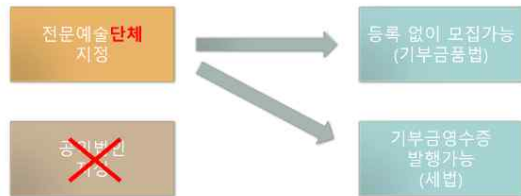
### 3.공익법인의 범위



- 사단법인·재단법인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1천만원 이상 모집함에도 등록 없이 모집행위 하고, 기부금영수증도 발행하고자 한다면 전문예술법인, 공익법인으로 각각 지정받아야 함
- 단, 언제나 1천만원 미만으로만 모집하거나,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기부 권유한다면 전문예술법인 지정은 불필요
-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받았다면 등록 없이 모집 가능하나, 세법상 유효한 기부금영수증 발급하려면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아야 함

80

### 3.공익법인의 범위



- 전문예술 '단체'로 지정되는 경우 세법상 공익단체에도 해당
- 따라서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1천만원 이상 모집하더라도 기부금품법상 등록 없이 모집 행위 가능하고, 기부금영수증도 발행 가능

31

### 4. 기부금 회계처리

#### 2) 개인기부자(개인사업자 or 사업자 아닌 개인)

- 개인사업자 또는 사업자 아닌 개인이 현물로 기부한 경우 기부가액
- 원칙: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 즉, 둘 중 큰 금액)
- 국립박물관 및 국립미술관 : 기증유물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위원회에서 산정한 금액

32

### 4. 기부금 회계처리

#### 1) 법인기부자

- 영리법인(주식회사 등) 손익계산서상 기부금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
- 법인이 현물로 기부한 경우 기부가액
  - 법정기부금 : 기부자의 장부가액
  - 지정기부금(특수관계 x) : 기부자의 장부가액
  - 그 외(특수관계 o) :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33

### 4. 기부금 회계처리

#### 3) 기부수혜자

- 기부수혜자 중 상당수가 상증법상 공익법인일 것이므로,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기부금 수입인식
- 기부를 받은 시점에 수입으로 인식
- 현물을 기부 받을 때에는 수익금액을 공정가치(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 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로 측정
- 기본재산에 편입하는 조건으로 기부금을 받은 경우 운영성과표상 사업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기본순자산의 증가로 인식

34

## 5. 기부금세제

### • 법인기부자

기부금의 종류	<1단계: 적용한도 계산>	<2단계: 세액감소효과 계산>
	손금산입한도	세액감소 효과
특례기부금 (구, 법정기부금)	소득금액 50%	기부금 손금한도 내 기부금 지출액*법인세율 (10% 또는 20%, 지방소득세 제외 기준)
일반기부금 (구, 지정기부금)	소득금액 10%(사회적기업 20%)	

### • 개인기부자

기부금의 종류	세액공제한도	세액공제
	특례기부금 (구, 법정기부금)	한도없음
일반기부금 (구, 지정기부금)	소득금액 30%	

35

## 5. 기부금세제

### 1) 법인기부자(손금산입)

- 다만, 민간 기부문화를 독려하기 위해 한도를 정하여 한도 내의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함 ⇒ **굳이 표현하면 이것이 기부금 세제 혜택**
- 즉, 한도 내에서 기부금을 지출한다면 다른 비용과 동일하게 손금 인정됨
- 한도를 초과하여 기부금을 지출할 경우 초과분은 손금불산입
- 다만, 이후 10년간 이월하여 손금산입 가능
- 기부금 한도 이내에서는 기부금과 그 외 비용의 손금산입 효과가 동일할 뿐이며, 추가적인 혜택은 없는 셈임
- **기업 입장에서는 기부금 세제 혜택을만 위해 기부금을 지출할 이유 없음**
- 결국, 기부금 지출 여부는 경영자의 가치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

37

## 5. 기부금세제

### 1) 법인기부자(손금산입)

- 세무상 기부금의 정의
  -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반대급부 없어야 함)
  - 재산적 가치가 있어야 함
  -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사업과 관련 있다면 접대비)
- 한편, 법인의 소득 계산 시 사업과 관련된 비용만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
- 결과적으로 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그 정의상 사업과 관련 없으므로 언제나 손금불산입 대상임
- 손금불산입 → 각사업연도소득 증가 → 법인세 증가
- 따라서 법인의 총 비용이 동일할 때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이 클수록 법인세가 증가할 수 밖에 없음

38

## 5. 기부금세제

### 2) 개인기부자(세액공제)

- 2014년부터 개인 기부금의 세제혜택 방식이 특별소득공제 → 특별**세액공제**로 전환됨
-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1천만 원까지 15%(1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세액공제
- 고액기부금 기준 금액 기준 2천만 원→2019년부터 1천만 원으로 하향조정
- 세액공제 적용한도 내에서는 기부금이 증가하는 만큼 세액공제액도 증가, 직접적인 세제혜택으로 볼 수 있음

39

# 5. 기부금세제

## 2) 개인기부자(세액공제)

- 일반기부금 세액공제 계산사례(지방소득세 제외 기준, 종교기부금 없는 것으로 가정)

사례1) 소득 5천만 원, 기부금 1백만 원인 경우

- 공제한도: 5천만 원x30%=1천5백만 원(따라서 기부금 전액 세액공제 대상)
- 세액공제: 1백만 원x15%= **150,000원**

사례2) 소득 2억 원, 기부금 1억 원인 경우

- 공제한도: 2억 원x30%=6천만 원(4천만 원은 추후 이월하여 공제)
- (1천만 원x15%) + (5천만 원x30%)= 1,500,000원 + 15,000,000원 = 16,500,000원
- 세액공제: **16.5백만 원**

39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2서식](2014.03.14 개정)

사업 연도	<b>기부자별 발급명세서</b>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입원 번호	기부 일	기부자 성명 (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기부명세			발급명세	
				주소 (본점 소재지)	내용	코드	금액	발급 번호

40

# 5. 기부금세제

## 3) 기부수혜자

- 기부자에게 기부금영수증 발급, 2021.07.01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 허위발급 시 5% 가산세
- 기부자별 발급명세서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구분	작성 및 제출
기부자별 발급명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작성하여 5년간 보관</li> <li>작성,보관하지 않은 경우 0.2% 가산세</li> </ul>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부금영수증 총 발급건수 및 금액 등 기재</li> <li>다음연도 6월30일까지 관할세무서 제출(홈택스 가능)</li> </ul>

- 다음연도 4월까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홈택스에 공시

41

### 가. 개정취지

- 기부금영수증 제도 관련 납세자 혼란 방지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기부금영수증 발급 법인의 의무</li> <li><input type="checkbox"/> (보관) 기부자별 발급명세물 5년간 보관할 필요</li> <li><input type="checkbox"/> (제출) 총 발급 건수·금액이 기재된 기부금영수증 발급 명세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명칭 변경</li> <li><input type="checkbox"/> (좌·동)</li> <li><input type="checkbox"/>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b></li> </ul> </li> </ul>

42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사업연도 (과세기간)		. . . ~ . . .			
1. 기부금 영수증 발급자 (공익법인등)	① 법인명(단체명)			② 대표자	
	③ 사업자등록번호 (교유번호)			④ 전화번호	
	⑤ 소재지				
	⑥ 유형	<input type="checkbox"/> 정부등 공공 <input type="checkbox"/> 교육 <input type="checkbox"/> 종교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 (해당함에 √) <input type="checkbox"/> 자선 <input type="checkbox"/> 의료 <input type="checkbox"/> 문화 <input type="checkbox"/> 학술 <input type="checkbox"/> 기타			
2.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발급현황					
(단위: 원)					
⑧ 기부자	④ 합계	⑨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 (중간 법정기부금)		⑩ 「법인세법」 제24조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 (중간 지정기부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법인					
개인					
합계					

「법인세법」 제112조의2제3항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제출합니다.

**5. 기부금세제**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 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 및 국제청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 (단서 추가)	○ 공개기간: 3개월 → <b>4개월 이내</b>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u>결산서류 등을 공시한 경우 중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u>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6항에 따른 표준서식으로 공시한 경우에 한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공개 또는 공시하는 분부터 적용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부금영수증 정의(법인세법 제75조의4) ○ 손금산입을 위해 필요한 영수증 (주 가)	○ 정의 추가 ○ (좌 동) ○ 전자기부금영수증 - 대용법으로 경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영수증 포함 * 국제청장이 규정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통해 발급하는 영수증
○ 기부자별 발급명세 보관 및 제출 의무 (법인세법 제112조의2) ○ (보존) 기부금영수증 발급일로부터 5년간 ○ (제출) 국제청장 등이 요청 시 제출할 의무 (단서 추가)	○ 단서 추가 ○ (좌 동) ○ (좌 동)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분 - 발급명세 보관 및 제출의무 면제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편람 세부서에 제출 (단서 추가)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분 - 제출의무 면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7.1. 이후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 공익법인 운영 시 지켜야 하는 의무**

구 분	내 용	의무 위반시 제재
장부가 직속비치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영내용 등에 대한 상부 작성 (10년간 보존)	· 가산세 부과 (수입금액 + 출연재산) × 0.07%
전용계좌 사용	전용계좌 사용의무 대상거래에 대해서 전용계좌 사용	· 미사용금액의 0.5%
출연재산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하고 이후 계속하여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 증여세 부과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 3년내 미사용금액, 3년 이후 사용유단 금액
	매각대금	1년 내 30%, 2년 내 60%, 3년 내 90% 이상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출연재산 직접 공익목적 사용	출연받은 재산은 1년 이상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 22.1.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 분까지 70%(성실공익법인 80%)	· 증여세 부과 출연재산가액 × 목적의사용금액 / 운용소득금액
운용소득	1년 내 80% 이상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 22.1.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 분까지 70%(성실공익법인 80%)	· 가산세 부과 운용소득금액의 80%에 미만 사용된 금액의 10%
의무지출	총지출금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인 매년 수입총 재산의 1%(수익 10% 초과 초과분은 3%) 이상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 가산세 부과 (사용기준금액 - 직접 공익목적 사용금액) × 10%

주식 관련	출연 받거나, 취득하는 경우	의결권 있는 내국법인 주식의 일정 비율 초과 보유 금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 있는 경우 또는 상장법 42조 11항 요건 불충족인 경우 5%, 일반법인인 경우 10%(지선·결환·시회복지 목적 법인 20%)	• 증여세 부과 • 초과하는 가액에 부과
	계열기업의 주식보유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가액을 총자산가액의 30%(외부감사, 전 항목적 개설·사용, 결산서류 공시 이행시 50%) 초과보유 금지	• 가산세 부과 • 초과보유 주식의 매사입연도별 현재의 시가×5% • 의무이행요건 충족시 제외
이사구성 등 제한		중연자 등이 이사의 1/5 초과 금지 또는 임직원 취임 금지	• 가산세 부과 • 기준 초과한 이사등과 관련하여 지출된 직·감점 경비 상당액 전액
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		외부 회계감사사무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대상 공익법인 (의료법인 의료법인,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 등 제외)	
기타	자기내부거래금지	출연받은 재산 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이 증명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특정기업 광고금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홍보를 하는 경우 가산세	
	해산시 잔여재산	사업을 종료할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 공익법인에 귀속하지 않는 경우 잔여재산을 공익법인이 증명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 Q&A

감사합니다

49

**□ 국세청에 제출·신고해야 하는 서류**

구분	내용	외부 위변조 가산세	
전용계좌 개설 신고	대상	모든 공익법인 (종교법인 제외, 다만 종교법정도 수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대상인 경우 해당)	미신고시 MAX(①②) ①: 공익수입금액×(A+B)×0.5% A: 전용계좌 개설신고 이행 기간 B: 해당 사업연도 일수 ②: 대상거래금액×0.5%
	신고기한	최초로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대상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	미제출 - 불분쟁금액 관련 증여세액 x 1%
	제출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외부선분기 세부회계연서 제출	대상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MAX(①②③) ①: (수입금액 + 출연재산) × 0.07% ②: 100만원
	제출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결산서류 공시	대상	모든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 다만 종교법정도 수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대상인 경우 해당) -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식으로 공시 가능	시정 요구(1개월 이내공시, 의무 시장통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산통액 x 0.5%)
	공시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외부 회계 감사보고서 제출	대상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가액 100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이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50억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종교·학교법인, 유지를 제외하건대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대상인 경우 제출대상임)	(수입금액 + 출연재산) × 0.07%
	제출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 부록

## 1. 관련 서식

## 2. 지자체별 조례 및 시행규칙

2023 전문예술법인·단체 경영 활성화 지원  
제도 담당 지자체 공무원 워크숍 자료집

### <서식 1>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변경) 신청서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1. 5.>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변경)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법인(단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한글)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한자)												
신청 내용	신청구분	[ ] 전문예술법인				[ ] 전문예술단체								
	예술단·공연장 등의 명칭													
	소재지 (예술단 등)	(전화번호: )												
법인 · 단체 현황	법인·단체 목적사업													
	법인·단체 성격	[ ] 재단법인				[ ] 사단법인				[ ] 임의단체				
	법인·단체 설립 등 기준일	설립연월일 (창단 또는 개관 공연·전시일)			사업자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법인전환일 (등기 연월일)						
	예술단 등의 재무현황 ※①② 중 해당 기째 ※법인부설시는 독립 재산기준적용	복식 ① 자산	부채	자본		최근 1년 수익		최근 1년 비용						
			수입	지출										
	규 모 ※해당란에 기입 하십시오	예술단 항목	명세	공연장 항목		명세	전시 관련 항목		명세					
		전용연습실	m <sup>2</sup>	공연장 등록번호 및 날짜			전시장 규모		m <sup>2</sup>					
		전용사무실	m <sup>2</sup>	객석수 또는 바닥면적(m <sup>2</sup> )		석 m <sup>2</sup>	전용사무실		m <sup>2</sup>					
		상근임직원 수	명	상근임직원 수		명	상근임직원 수		명					
		전임단원 수	명	무대예술전문인 고용인원		명	전문인력 고용인원		명					
후원회원 수		명	후원회원 수		명	후원회원 수		명						
그 밖의 명세			그 밖의 명세			그 밖의 명세								

210mm × 297mm [백상지(80g/m<sup>2</sup>) 또는 중질지(80g/m<sup>2</sup>)]

(뒤쪽)

연도	제목	기간	장소명 (객석수, 전사면적)	일수 및 횟수	관객수	유료 관객수
년						
년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조직·인력 운영 현황 자료 1부 5. 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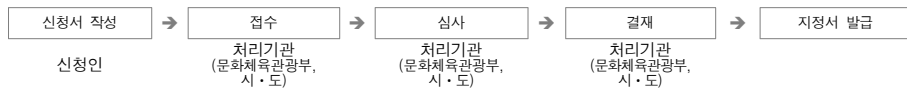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서식 2>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서**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1.11.25>

지정번호 제 호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서**

1. 법인(단체)의 명칭:

- 소재지:
- 대표자: (생년월일: )

2. 운영 예술단·공연장·전시행사단 등 내역

- 명 칭:
- 소재지:

3. 법인(단체)의 주요 목적사업

- 
- 
- 

위 법인(단체)을(를)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른 전문예술법인(단체)(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직인**

210mm × 297mm [보존용지 120g/㎡]



<서식 3>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대장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11.11.25>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대장**

일련 번호	지정형태	유 형	법인(단체)명	성명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변경내용 및 변경일자

\* 지정형태: 전문예술법인, 전문예술단체  
\* 유 형: 공연예술단체 운영, 공연장 운영, 전시 기획 및 전시장 운영, 기타

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서식 4>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취소 기록대장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11.11.25>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취소 기록대장**

일련 번호	문서번호 및 발송일자	법인(단체)명	성명 (대표자)	위반사항	처분내용 및 처분일자	관계 조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서식 5-1> 기부금영수증(개인)

(뒤쪽)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서식] <개정 2023. 3. 20.>

일련번호		기부금 영수증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① 기부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② 기부금 단체**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지점명)	(지점 사업자등록번호 등)
소재지	기부금공제대상
(지점 소재지)	기부금단체 근거법령

\* 기부금 단체의 지점(분사무소)이 기부받은 경우, 지점명 등을 추가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③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④ 기부내용**

코 드	구 분 (금전 또는 현물)	연월일	내 용			금 액
			품명	수량	단가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제76조·제88조의4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위와 같이 기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기부금을 기부받았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부금 수령인  (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 또는 중질지 80g/m<sup>2</sup>]

작성 방법

1. ㉠ 기부금 단체는 해당 단체를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을 적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	코드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가목(국가·지방자치단체), 나목(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	101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다목(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102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같은 목에 열거된 사립학교, 비영리 교육재단, 산학협력단 등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03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마목(같은 목에 열거된 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04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바목[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만 해당)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	105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나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단체)	116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당(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포함)	201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가목(「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01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나목(「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402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다목(「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403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라목(「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404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마목(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	405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406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가목(「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등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407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나목(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408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40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4호(같은 호 각 목에 열거된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4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6호(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국제기구)	411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2호(노동조합 등의 회비)	421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공익단체)	422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	461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	462

2. ㉠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는 방송사, 신문사, 통신회사 등 기부금을 대신 접수하여 기부금 단체에 전달하는 기관을 말하며, 기부금단체에 직접 기부한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3. ㉠ 기부내용의 코드는 다음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기부금 구분	코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	10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	20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종교단체기부금 제외),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	40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	4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른 기부금	42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따른 기부금	43
필요경비(손금) 및 소득공제금액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부금	50

4. ㉠ 기부내용의 구분란에는 "금전기부"의 경우에는 "금전",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현물"로 적고, 내용란은 현물기부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현물기부 시 단가란은 아래 표와 같이 기부자, 특수관계여부 등에 따라 정부가액 또는 시가를 적습니다.

구 분	기부자		기부받는 공익법인
	법인	개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Max(장부가액, 시가)	Max(장부가액, 시가)	시가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장부가액	Max(장부가액, 시가)	장부가액*

\* 기부한 자의 기부 당시 장부가액, 개인이 사업소득과 관련 없는 자산을 기부한 경우 : 개인의 최초 취득가액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 또는 중질지 80g/m<sup>2</sup>]

### <서식 5-2> 기부금영수증(법인)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외3서식] <개정 2023. 3. 20.>

일련번호

## 기부금 영수증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 쪽 )

### 1 기부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 2 기부금 단체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지점명*)	(지점 사업자등록번호 등)
소재지	기부금공제대상 공익법인등 근거법령
(지점소재지)	

\* 기부금 단체의 지점(분사무소)이 기부받은 경우, 지점명 등을 추가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 3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4 기부내용

코 드	구 분 (금전 또는 현물)	연월일	내 용			금 액
			품명	수량	단가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제76조·제88조의4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위와 같이 기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기부금을 기부받았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부금 수령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작성 방법

- 기부금 대상 공익법인등은 해당 단체를 기부금 공제대상 공익법인등, 공익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을 적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	코드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가목(국가·지방자치단체), 나목(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	101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다목(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102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같은 목에 열거된 사립학교, 비영리 교육재단, 산학협력단 등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03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마목(같은 목에 열거된 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04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바목(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만 해당)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	105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나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단체)	116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당(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포함)	201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가목(「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01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나목(「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402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다목(「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403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라목(「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404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마목(「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405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406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가목(「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등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407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나목(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408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40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4호(같은 호 각 목에 열거된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4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6호(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국제기구)	411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2호(노동조합 등의 회비)	421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공익단체)	422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	461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고향사랑기부금)	462

-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는 방송사, 신문사, 통신회사 등 기부금을 대신 접수하여 기부금 단체에 전달하는 기관을 말하며, 기부금 대상 공익법인등에게 직접 기부한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 기부내용의 코드는 다음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기부금 구분	코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10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	20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종교단체 기부금 제외),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40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	4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른 기부금	42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따른 기부금	43
필요경비(순금) 및 세액공제 금액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부금	50

- 기부내용의 구분란에는 "금전기부"의 경우에는 "금전",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현물"로 적고, 내용란은 현물기부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현물 기부"시 "단가"란은 아래 표와 같이 기부자, 특수관계여부 등에 따라 장부가액 또는 시가를 적습니다.

구 분	기부자	
	법인	개인
특례기부금	장부가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일반기부금	장부가액	Max(장부가액, 시가)
그 밖의 기부금	Max(장부가액, 시가)	

- (유의사항) 2021년 7월 1일 이후 전자기부금영수증(「법인세법」 제75조의4제2항 및 제112조의2에 따른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말함)을 발급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중복발행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서식 6> 기부자별 발급명세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2서식] <개정 2023. 3. 20.>

사업연도	기부자별 발급명세서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일련 번호	기부일	기부자 성명 (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본점 소재지)	기부명세 내 용	코 드	금 액	발급명세	
							발급 번호	발급일

작성 방법

※ 코드란에는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종전 법정기부금, 예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기부금)은 (10)으로,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종전 지정기부금, 예 사회복지, 문화, 교육, 종교 등 기부금)은 (40)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 또는 중질지 80g/m<sup>2</sup>]

<서식 7>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3서식] <개정 2023. 3. 20.>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사업연도(과세기간)      . . . ~ . . .

1. 기부금 영수증 발급자 (공익법인등)	① 법인명(단체명)	② 대 표 자
	③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④ 전화번호
	⑤ 소 재 지	
	⑥ 유 형 (해당란에 √)	
	<input type="checkbox"/> 정부등 공공 <input type="checkbox"/> 교육 <input type="checkbox"/> 종교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 <input type="checkbox"/> 자선 <input type="checkbox"/> 의료 <input type="checkbox"/> 문화 <input type="checkbox"/> 학술 <input type="checkbox"/> 기타	

2.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발급현황

(단위: 원)

⑦ 구 분	⑧ 합 계		⑨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 (종전 법정기부금)		⑩ 「법인세법」 제24조제3항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 (종전 지정기부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⑪ 기부자						
법 인						
개 인						
합 계						

「법인세법」 제112조의2제3항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 방법

- 이 서식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⑥ 유형란: 기부금 영수증 발급자(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합니다.
- ⑧ ~ ⑩ 란: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건수 및 총 발급금액을 적습니다.
- 2021년 7월 1일 이후 전자기부금영수증(「법인세법」 제75조의4제2항 및 제112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을 발급하는 분부터는 본 서식을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 또는 중질지 80g/m<sup>2</sup>]

<서식 8> 기부금 모집 명세서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 7. 7.>

**기부금 모집 명세서**

연월일	기부자명	금 액	누 계	비 고

비 고

1. 이 장부는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한 경우 통장 등과 합본할 수 있습니다.
2. 모집종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모집종사자별로 색인표를 붙일 수 있습니다.
3. 금액란에는 기부자로부터 모집한 금액이나 예금이자 등을 적어야 합니다.
4. 필요한 경우 여백을 이용하여 일별 합계 또는 월별 합계와 잔액 등을 적을 수 있습니다.
5. 익명(비실명) 기부자의 경우 기부자명란에 계좌번호 또는 모금장소 등을 적을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9> 기부물품 모집 명세서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 7. 7.>

**기부물품 모집 명세서**

연월일	기부자명	품 명	수 량	비 고

비 고

1. 모집종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모집종사자별로 색인표를 붙일 수 있습니다.
2. 필요한 경우 여백을 이용하여 물품의 종류별 일별 합계 또는 월별 합계 등을 적을 수 있습니다.
3. 익명(비실명) 기부자의 경우 기부자명란에 발송자주소 또는 모금장소 등을 적을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10> 기부금품 모집비용 지출부

[별지 제7호서식]

기부금품 모집비용 지출부

연월일	지출내용	예산액	지출액		잔액	비고
			지출	누계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70g/m²]

<서식 11> 기부금품 모집 완료보고서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0. 7. 7.>

기부금품 모집 완료보고서

등록번호			
모집자 (개인 또는 법인·단체)	성명 또는 법인·단체명		생년월일 또는 법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단체의 대표자 성명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모집목적			
모집등록금액		모집기간	
완료내용(모집금품의 총액 및 수량)			
1. 현금			
모집년도	모금방법	모금액(원)	비고
합계			※ 모집등록금액 대비 비율 (%)
2. 물품			
모집년도	물품건수	물품가액	비고
합계			
3. 기타수입: 원			
4. 모금액의 금융회사별 예치명세			
금융회사	금액(원)	계좌번호	예금주
합계			

첨부: 기부금을 접수한 금융회사 등의 예금 잔액증명서 각 1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모집을 완료했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모집자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서식 12>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서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0. 7. 7.>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

등록번호	모집기간	
모집자 (개인 또는 법인·단체)	성명 또는 법인·단체명 법인·단체의 대표자 성명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생년월일 또는 법인(사업자)등록번호
모집목적		
모집등록금액		

모집금품의 총액 및 수량

1. 현금

모금방법	모금액(원)	비고
		※ 모집등록금액 대비 비율(%)
합계		

2. 물품

품명	물품건수	물품가액	비고
합계			

3. 기타수입: 원

기부금품의 사용명세

사용항목	금액(원)	사용방법	비고
		※ 필요시 별첨	※ 모집금액 대비 비율(%)
모집비용			
합계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일 년 월 일

첨부: 1.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회계감사보고서 1부(기부금품 모집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기부금품 사용에 따른 영수증 등 지출증명서류(기부금품 모집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명세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모집자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13> 전문예술법인·단체 운영실적 조사지

**전문예술법인·단체 운영실적 조사지**

(앞 쪽)

법인·단체 기본정보	법인(단체)명	설립연월일 (창단 또는 개관일)		
	소재지	(전화: )		
	대표자 성명			
	대표자전화번호	대표자e-mail		
	법적형태	[ ] 민법인(재단) [ ] 민법인(사단) [ ] 임의단체 [ ] 사회적협동조합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공연장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 ] 법인사업자등록증 [ ] 개인사업자등록증 [ ] 고유번호증			

법인·단체 운영현황	인력현황	공연분야 ①	구분	총인원	정규직	비정규직	
			기회행정인력	명	명	명	
		전시분야 ②	기술기타인력	명	명	명	
			상근단원	명	명	명	
		기타분야 ③	기회행정인력	명	명	명	
			기술기타인력	명	명	명	
	공통	구분		총인원	임원	직원	
		4대보험 가입	명	명	명		
		4대보험 비가입	명	명	명		
		합계	명	명	명		
	공간현황	전용사무실 규모	㎡	공연장규모 (총 객석수)	석		
		전용연습실 규모	㎡	전시장규모	㎡		
	회원현황	일반회원	명	법인회원			
		후원회원	명	법인회원			
재정현황	공통	수입총액	천원	자체수입	천원	천원	
				공공지원금	천원	천원	
	지출총액	천원	기부/후원금	천원	개인기부금	천원	천원
					기업기부금	천원	천원
					사업비		천원
					경상운영비		천원
인건비		천원					
복식	자산	천원	부채	천원	자본	천원	

(뒤 쪽)

공 연 간 실 적	공연제작	구분	총 공연실적	공연 일수	공연 횟수	총 관객 수	유료 관객 수
		자체기획·제작	편	일	회	명	명
		행사참가·초청	편	일	회	명	명
	대관실적	편	일	회	명	명	
	전시실적	구분	총 전시실적	전시 일수	총 관객 수	유료 관객 수	
		자체기획·제작	편	일	명	명	
		행사참가·초청	편	일	명	명	
		대관실적	편	일	명	명	
	지 원 사 업 간 실 적	구분	총 지원사업		총 지원 금액		
		지원사업 실적	건		천원		
세 부 실 적	공연·전시 제 목	공연·전시 기 간	공연·전시장명	공연·전시 일수	총 관객 수	유료 관객 수	
		~		일	명	명	
		~		일	명	명	
		~		일	명	명	
		~		일	명	명	
		~		일	명	명	
		~		일	명	명	
		~		일	명	명	
		~		일	명	명	
		~		일	명	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 법인·단체 기본정보 작성요령

- ① 사업자등록유형
  - 개인사업자등록증과 고유번호증의 번호가 다른 경우 : 개인사업자등록증과 고유번호증을 중복선택
  - 개인사업자등록번호와 고유번호가 같은 경우 : 발행일이 최근인 등록증만 선택

2) 인력현황 작성요령

- ① 고용형태 : 정규직/비정규직 구분이 모호한 단체에서는 모두 비정규직으로 집계하여 주십시오.
- ② 기획·행정인력 : 공연(전시)기획, 제작, 홍보, 총무, 인사, 회계 등 기획 및 일반 관리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스태프
- ③ 기술·기타인력 : 무대기술관련, 전시설치, 조명, 음향 등 기술 및 기타업무를 담당하는 스태프
- ④ 상근단원(공연분야) : 정기적인 고정급여를 받으며 '주당 3일 이상' 정기적으로 근무하는 배우, 성악가, 연주자, 무용가 등 출연자와 연출가, 안무가, 극작가, 작곡가 등의 작품 관련 스태프 (연습생이나 보조원 들은 제외)
- ⑤ 전속단원(기타기관) : 전속단체가 있는 경우, 단체(법인)에 소속되어 정기적인 고정급여를 받으며 '주당 3 일 이상' 정기적으로 근무하는 배우, 성악가, 연주자, 무용가, 연출가, 안무가, 극작가, 작곡가 등의 작품 관련 스태프 (연수단원이나 보조원들은 제외)
- ⑥ 공통 : 고정급여를 받는 재직 임원·직원 수 및 임직원 중 4대보험 가입·비가입 인원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3) 공간현황 작성요령

- ① 전용사무실 규모 :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전용사무공간의 규모를 작성하여 주십시오.
- ② 공연장 규모 : 공연장을 보유하고 있는 단체의 경우, 공연장의 총 객석수를 합산하여 작성하여 주십시오.
- ③ 전용연습실 규모 : 전용연습실을 보유하고 있는 단체의 경우, 연습실 규모를 작성하여 주십시오.
- ④ 전시장 규모 : 전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단체의 경우, 전시장의 총 면적을 합산하여 작성하여 주십시오.

4) 회원현황 작성요령

- ① 일반회원 수 : 유료회원 수 및 무료회원 수, 은·오프라인의 회원 모두 포함하여 작성하여 주십시오.
- ② 후원회원 수 : 귀 단체를 위해 운영하는 후원회의 개인 및 법인 회원 수를 작성하여 주십시오.

5) 재정현황 작성요령

- ① 공통 : 단식/복식부기 방식과 관계없이 모두 작성하여 주십시오.
- ② 복식부기단체 : 전년도 기준 자산, 부채, 자본 총액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6) 공연·전시 연간실적 작성요령

- ① 공연·전시 편수 : 연간 진행한 공연 및 전시의 총 작품 수(편수)를 작성하여 주십시오.
- ② 공연·전시 일수 : 연간 공연 및 전시가 1회 이상 있었던 날짜의 일수를 의미하며 공연의 경우, 하루 3회 공연이 있었다 해도 1일로 산정하여 작성하여 주십시오.
- ③ 공연 횟수 : 연간 진행한 공연의 총 횟수를 작성하여 주십시오. 예를 들어, 하루 2회씩 총 10일간 공연 한 경우, 20회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 ④ 총 관객 수 : 연간 진행한 공연 및 전시의 총 관객 수를 작성하여 주십시오.
- ⑤ 유료관객 수 : 유료관객이 없을 경우, '0'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 ⑥ 대관실적 : 전시장 및 공연장 등 공간운영 단체만 작성하여 주십시오.
- ⑦ 자체기획·제작 : 단체가 직접 기획하거나 제작한 공연 또는 전시
- ⑧ 행사참가·초청 : 타 기관(단체)에서 주최한 행사(축제)에 참가 혹은 초청된 공연 또는 전시

7) 지원사업 연간실적 작성요령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단체의 경우, 전년도 지원사업 총 건수 및 지원금 총액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8) 세부실적 작성요령

전년도 대표적인 공연 및 전시사업 세부실적을 5건 내외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최소 1건 이상 작성)



## 지자체별 조례 및 시행규칙

### 1) 서울특별시

#### 1-1.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8410호, 2022. 4. 28.]

##### 제6장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의 지정과 육성

###### 제32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 ①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제2항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지정(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 ②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시에 소재지를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하여 활동 중인 비영리법인·단체
  2. 예술단·공연장·미술관·전시관의 운영이 다수의 주된 목적사업 중 하나이고 독립채산이 가능한 직제 및 회계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법인·단체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며,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28>
  1. 조직·인력 운영의 적정성
  2. 재정 운영의 건전성
  3. 공연·전시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수행 능력 또는 공연·전시시설의 운영 능력
  4. 공연·전시된 작품의 예술적 완성도
  5. 사회적 기여도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전문예술법인·단체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회의 개최 시마다 시장이 위촉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위촉 해제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2명 이내
  2.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1명
  3. 문화예술분야에 조예가 깊고 덕망있는 사람
- ⑤ 전문예술법인·단체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9조, 제20조,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를 준용한다.

###### 제33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취소)

- ①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라 시장은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기획 또는 제작한 공연·전시실적이 연 1회 미만인 경우
  3. 1년 이상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지 않거나 공연·전시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4. 전시·공연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술활동 실적을 제출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 ②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과 취소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34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원과 육성)

시장은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1-2. 문화도시 기본 조례 시행규칙

[타법개정] 규칙 제4496호, 2022. 8. 18.]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0>

##### 제2조(지정계획 공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보,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및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3조(지정절차)

- ①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2조제3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대장에 등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0>

##### 제4조(지정취소)

시장은 조례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법인 또는 단체에 문서로 통보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9.10.10>

##### 제5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관리)

- ①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전문예술법인·단체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② 제3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는 매년 별지 제4호서식의 운영실적과 별지 제5호 서식의 사업수지결산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된 전문 예술법인·단체를 별도로 관리하는 기관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2.23>

## 2) 경기도

### 2-1.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7495호, 2022. 12. 30.]

#### 제4장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

##### 제16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범위)

- ①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전문예술법인”이란 「민법」·「특별법」에 따른 비영리 법인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도 또는 도내 시·군이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2.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개정 2015.12.31.>
  3.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4.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위하여 도 또는 도내 시·군이 설립한 법인
- ② 법 제7조에 따른 “전문예술단체”란 제1항의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아닌 단체를 말한다.

##### 제17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취소)

-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제14조에 따른 경기도 문화자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16조에 따른 전문예술법인·단체 중 지원·육성이 필요한 법인·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7.14.]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예술법인·단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예술활동 실적저조 등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 ③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기준 및 절차와 지정취소 및 그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8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원·육성)

- ① 도지사는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진흥기금 등의 공모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0.>
- ② 도에서 설립한 문화예술 관련 법인의 공연·전시 시설운영자는 전문예술법인·단체가 공연 등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자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을 줄 수 있다. <개정 2014.1.10.>
- ③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정기·기획 공연 및 전시활동에 경기도가 후원함을 명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2. 문화예술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 제3863호, 2019. 8. 14.]

#### 제2조(지정대상)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대상은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가 문화예술진흥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에는 제2호 분야별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01.>

#### 1. 공통요건

- 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내에 소재지를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하여 정상적인 문화예술활동을 하고 있어야 한다.
- 나. 법인인 경우에는 예술단, 공연장, 미술관, 전시관의 운영이 다수의 주된 목적 사업중의 하나일 경우에는 지정대상 사업에 관한 독립재산이 가능하도록 직제 및 회계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 2. 분야별 요건

- 가. 공연(무대예술공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분야의 경우에는, 매년 1편이상의 정기공연 또는 기획공연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만, 예술단 또는 공연장간 합병이나 통합한 경우에는 종전의 예술단 또는 공연장중 하나의 창단, 개관일 및 공연실적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2.01.>
- 나. 미술·전시분야의 경우에는, 매년 4건 이상의 정기적인 창작 또는 기획전시프로그램을 개최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만, 비엔날레, 트리엔날레의 경우는 총 개최실적을 2건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12.01.>

#### 제3조(지정계획 공고)

도지사는 매년 10월에 다음연도의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도보 및 경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지정신청)

제2조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5조(지정결정)

-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조례 제3조에 따른 경기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를 다음연도 1월말까지 결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예술법인·단체로서의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
  2. 문화예술활동의 연속성 및 도의 문화예술발전에 대한 기여도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 단서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4조에 따라 지정 신청을 할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거쳐 수시 지정할 수 있다.

#### 제6조(지정취소)

- ① 도지사는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예술법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법인의 경우에는 예술단, 공연단, 미술관, 전시관의 운영이 다수의 주된 목적사업 중의 하나일 경우 지정대상 사업에 관한 독립재산이 가능하도록 직제 및 회계체제를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3. 공연 분야의 경우에는 매년 1편이상의 정기공연 또는 기획공연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미술·전시분야의 경우에는 매년 4건 이상의 정기적인 창작 또는 기획전시 실적이 없는 경우. 다만, 비엔날레와 트리엔날레의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실적이 없는 경우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야 하며, 다만,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경고 또는 시정조치를 한 다음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지정법인·단체의 관리)**

- ① 전문예술법인·단체는 신청서상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는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실적 및 수지결산 현황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인천광역시**

**3-1.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6920호, 2022. 12. 30.]

**제4장 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육성**

**제14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 ① 시장은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소재지를 둔 비영리법인·단체 중에서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5-12-28>
- ② 시장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전문예술 법인·단체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연 1회 이상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8>
- ③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4조1항에 따라 지정(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영 제4조의2에 따른 지정(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8>
- ④ 시장은 지정받은 전문예술법인·단체가 법 제7조제4항 및 영 제4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5-12-28>

**제15조(전문예술법인·단체 등의 지원·육성)**

- ① 시장은 영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01-16> <조이동 2015-12-28>
- ② 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공연·전시시설 중 공공시설 운영자는 영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와의 상주계약에 의하여 공동 기획공연·전시를 조건으로 소관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2-01-16> <조이동 2015-12-28>

**제15조의2** <삭제 2015.12.28>

**제15조의3** <삭제 2012.01.16>

**4) 강원특별자치도**

**4-1.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4920호, 2022. 6. 30.]

**제3장 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육성**

**제5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범위)**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전문예술법인·단체”란 다음 각 호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도지사가 지정한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1. 도(도내 시·군을 포함한다)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도내에 소재지를 두고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3. 도내에 소재지를 두고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4.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제6조(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

-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 ②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 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을 말하며, 이하 제5호 및 제6호에서 같다)의 조직·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5. 최근 2년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6. 최근 2년간의 공연·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전시시설의 운영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함)
-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조직·인력 운영의 적정성
  2. 재정 운영의 건전성
  3. 공연·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전시시설의 운영 실적
  4. 공연·전시된 작품의 예술적 완성도
  5.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도지사는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① 전문예술법인·단체가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변경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서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8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취소)**

① 도지사는 전문예술법인·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기획 또는 제작한 공연·전시 실적이 연 1회 미만인 경우
3. 1년 이상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지 않거나 공연·전시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4. 전시·공연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술활동 실적을 제출하여 문화예술진흥사업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본항 신설 2022.6.30.]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취소 기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중전 제2항에서 이동 2022.6.30.]

**제9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원·육성)**

① 도지사는 지정된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지방비 및 자금 등이 우선적으로 지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정된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의 공연이나 전시행사에 공공 공연장·전시장의 사용편의를 제공하는 등 원활한 예술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5. 대전광역시**

**5-1.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5925호, 2022. 12. 30.]

**제1장 총 칙**

**제11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①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른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은 대전광역시에 소재지를 둔 비영리법인·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②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8.14.>

**제12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원·육성)**

①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대전광역시 소유 공연·전시시설 운영자는 전문예술법인·단체와의 상주계약으로 공동 기획공연·전시를 조건으로 소관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5-2. 문화예술진흥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 제2876호, 2012. 9. 7.]

**제2조(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공고)**

대전광역시장은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하는 경우 대전광역시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운영실적 제출)**

전문예술법인·단체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연간 운영실적을 대전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충청북도**

**6-1.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4888호, 2023. 4. 7.]

**2장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과 육성**

**제3조(범위)**

전문예술법인·단체는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다.

**제4조(지정 및 취소)**

① 도지사는 지원·육성이 필요한 법인·단체를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예술법인·단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예술활동 실적이 저조할 경우 등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10.7.>

③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기준, 절차, 취소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지원 및 육성)**

① 도지사는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공연·전시시설 운영자는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와의 공동 기획공연·전시를 조건으로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삭제** <2014. 8. 8.>

## 6-2.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 제2745호, 2012. 9. 14.]

### 제2조(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계획 공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다음연도의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도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3조(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신청 및 결정)

- ①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 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단체의 경우 설립된이후의 기간을 말하며, 이하 제5호 및 제6호에서 같다)의 조직·인력운영현황 자료 1부
  5. 최근 2년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6. 최근 2년간의 공연·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사업 및 활동의 지원실적 또는 공연·전시시설의 운영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함)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결정 한다.
  1. 조직·인력 운영의 적정성
  2. 재정운영의 건전성
  3. 공연·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전시시설의 운영 실적
  4. 공연·전시된 작품의 예술적 완성도
  5.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제2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받은 사항의 변경신고)

- ① 전문예술법인·단체가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변경 신고한 내용이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한다.

### 제5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취소)

- ① 제3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기획 또는 제작한 공연·전시 실적이 매 1년 내 전혀 없는 경우
  3. 1년 이상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지 않거나 공연·전시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4. 전시·공연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술활동 실적을 제출하고 문화예술관련 사업비 등을 지원 받은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7) 충청남도

### 7-1.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5359호, 2023. 3. 10.]

### 제3장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

#### 제13조(지정)

-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문예술 법인·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위원회 심의 시 별도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③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기준, 절차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4조(지원 및 육성)

- ① 도지사는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경우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규정에 따른다.

### 7-2. 문화예술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 제3249호, 2015. 9. 10.]

### 제2장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

#### 제2조(신청자격)

「문화예술진흥법」제7조 및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는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이하 “전문예술법인·단체”라 한다)는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충청남도 내에 소재를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하여 정상적인 문화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예술단·공연장·미술관·전시관의 운영이 다수의 주된 목적사업 중 하나일 경우에는 독립채산이 가능하도록 직제 및 회계체제를 유지할 것
3. 공연분야의 경우 창단 또는 개관하여 매년 1회 이상의 정기공연 또는 기획공연 실적이 있을 것. 다만, 합병이나 통합한 예술단 또는 공연장의 경우에는 합병 또는 통합전의 예술단 또는 공연장 중 하나의 창단일·개관일 및 실적을 인정한다.
4. 전시분야의 경우 창단 또는 개관하여 매년 4회 이상의 정기적인 창작 또는 기획전시 프로그램을 개최한 실적이 있을 것. 다만, 비엔날레와 트리엔날레 전시프로그램인 경우에는 실적을 2회 이상으로 한다.

### 제3조(지정계획 공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다음 연도의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충청남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지정결정)

-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조례 제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한 때에는 영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대상과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부에 기록하고, 영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 제5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관리)

제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예술법인·단체는 해당 연도의 연간 운영실적과 수지결산 현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8) 광주광역시

### 8-1.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6099호, 2023. 4. 10.]

#### 제3장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

##### 제5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계획 수립)

시장은 영 제4조에 따른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연 1회 이상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전문예술법인·단체지정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 ① 전문예술법인·단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전문예술법인·단체지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심사위원회는 별표의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기준과 시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을 종합하여 전문 예술법인·단체의 지정 여부 및 기 지정한 법인·단체의 취소 여부를 심사한다.
-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문화예술담당 실·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11.3.>
- ④ 위원은 연극·음악·무용·국악·미술·공연 및 전시분야에 조예가 깊은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1.3.>
- ⑤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3.>

### 제7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 ① 「문화예술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전문예술법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민법」·「특별법」에 의한 모든 법인을 포함한다) 중 시장이 지정한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5.12.28, 2021.11.3.>
  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2.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3.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4.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 ② 법 제7조에 따른 “전문예술단체”는 제1항의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 중 시장이 지정한 단체를 말한다.

### 제8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취소)

-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예술법인·단체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예술활동의 실적 저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 그 밖에 전시·공연 질서 문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야 하며, 다만, 제1항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경고 또는 시정조치를 한 다음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9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원)

- ① 시장은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시비보조, 소관 공공자금의 지원, 융자사업의 수행 등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②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공연·전시시설은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에 우선하여 대관 할 수 있다.
- ③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11.3.>

### 제10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사업실적 등 제출)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는 매년 사업 추진실적 및 수지 결산현황 등을 별지 5호 서식에 기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8-2. 별 표

<개정 2015.12.28.>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기준

#### 1. 신청기준

- 1)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정상적인 활동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 2) 법인의 경우 예술단, 공연장, 미술관, 전시관의 운영이 다수의 주된 목적사업중 하나일 경우에는 독립채산이 가능하도록 직제 및 회계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 3) 공연분야의 경우에는 매년 1편 이상의 정기공연 또는 기획공연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예술단 또는 공연장간 합병이나 통합한 경우에는 종전의 예술단 또는 공연장 중 하나의 창단, 개관일 및 공연 실적을 적용할 수 있다.
- 4) 미술분야의 경우에는 매년 2건 이상의 정기적인 창작 또는 기획전시프로그램을 개최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비엔날레, 트리엔날레의 경우는 총 개최 실적이 1건 이상이어야 한다)

#### 2. 지정심사 기준

##### 가. 공연분야

- 1) 최근 2년간의 공연활동 실적에 대해 작품성·전문성·공연기획의 참신성·관객확보율·공연이나 기획에 대한 반응 등 작품의 완성도와 단체 운영의 전문성을 중심으로 심사한다.
- 2) 전문예술인·전문기획자·무대예술전문인 자격 소지자 등 전문인력의 보유상태와 재정상태·전용시설의 보유상태 등 조직역량에 대하여 심사한다.
- 3) 관객이나 평론가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주요 작품의 보유상태·작품이나 단체의 수상경력 해외 공연 참가 경력과 성과 등 공연장이나 예술단의 대외적 평가에 대하여 심사한다.
- 4) 국민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공익성을 고려한 기획 등 사회기여도를 심사한다.
- 5) 상기 1) 내지 4)의 기준과 심사위원회 및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종합 심사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 나. 미술분야

- 1) 최근 2년간 창작지원 및 전시 활동실적에 있어 독창성, 예술성, 참신성, 전문가 평가 및 일반 관람객 반응, 미술발전 기여도 등을 심층적으로 심사한다.
- 2) 창작 및 전시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 보유상태, 재정능력, 전용시설 보유상태 등 조직 역량에 대하여 심사한다.
- 3) 해외진출 실적 등 경쟁력 있는 양질의 유·무형의 문화자원의 생산실적과 작가발굴 등에 대하여 심사한다.
- 4) 국민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공익성을 고려한 기획 등 사회 기여도를 심사한다.
- 5) 상기 1) 내지 4)의 기준과 심사위원회 및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종합 심사하여 지정 여부

## 9) 전라북도

### 9-1.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5132호, 2022. 10. 21.]

#### 제3장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운영

##### 제13조(전문예술단체의 범위)

「문화예술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전문예술법인·단체란 「민법」, 「특별법」에 따른 법인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8. 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3.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4. 문화예술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제14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및 변경취소 등)

- ①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을 위하여 도지사는 법 제17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매년 9월부터 10월까지 지정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매년 11월까지 별표1의 지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예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지정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④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및 취소는 영 제4조의3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
- ⑤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는 매년도의 사업추진실적 및 수익결산현황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9>

##### 제15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원·육성)

지사는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지방비 보조, 소관 공공자금의 지원 및 용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한다.

9-2. 별 표

<개정 2019. 8. 9.>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기준**

**1. 신청기준**

- 1)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정상적인 활동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 2) 법인의 경우 예술단, 공연장, 미술관, 전시관 운영이 다수의 주된 목적사업중 하나일경우에는 독립채산이 가능하도록 직제 및 회계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3) 공연분야의 경우 창단 또는 개관한 지 2년 이상 경과되고, 매년 1편이상의 정기공연 또는 기획 공연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예술단 또는 공연장간 합병이나 통합한 경우에는 종전의 예술단 또는 공연장 중 하나의 창단, 개관일 및 공연실적을 적용할 수 있다.
- 4) 미술분야의 경우 창립 또는 개관한 지 2년 이상 경과되고, 매년 2건 이상의 정기적인 창작 또는 기획 전시프로그램을 개최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비엔날레, 트리엔날레의 경우는 총 개최실적이 2건 이상이어야 한다.)

**2. 지정 심사 기준**

**가. 공연분야**

- 1) 최근 2년 간의 공연활동 실적에 대해 작품성,전문성,공연기획의 참신성, 관객확보율, 공연이나 기획에 대한 반응 등 작품의 완성도와 단체 운영의 전문성을 중심으로 심사한다
- 2) 전문예술인, 전문기획자, 무대예술전문인 자격 소지자 등 전문인력의 보유상태와 재정상태, 전용 시설의 보유상태 등 조직역량에 대하여 심사한다.
- 3) 관객이나 평론가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주요 작품의 보유상태, 작품이나 단체의 수상경력, 해외 공연 참가 경력과 성과 등 공연장이나 예술단의 대외적 평가에 대하여 심사한다.
- 4) 국민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공익성을 고려한 기획 등 사회 기여도를 심사한다.
- 5) 상기 1)내지 4)의 기준과 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종합 심사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나. 미술분야**

- 1) 최근 2년간 창작지원 및 전시 활동실적에 있어 독창성, 예술성, 참신성, 전문가 평가 및 일반 관람객 반응, 미술발전 기여도 등을 심층적으로 심사한다
- 2) 창작 및 전시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 보유상태, 재정능력, 전용시설 보유상태 등 조직역량에 대하여 심사한다
- 3) 해외진출 실적 등 경쟁력 있는 양질의 유·무형의 문화자원의 생산실적과 작가발굴 등에 대하여 심사한다.
- 4) 국민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공익성을 고려한 기획 등 사회기여도를 심사한다.
- 5) 상기 1)내지 4)의 기준과 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종합 심사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3. 재 지정시 평가 기준**

- 1) 제2호의 지정시 심사기준의 지속적 충족여부를 평가한다.

- 2) 지정 1차년도에 작성된 결산보고서를 토대로 재정상태의 건전성,기부금 집행의 투명성등에 대하여 평가한다.(외부감사 의견서나 세무회계 조정 의견서를 첨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 향후 2년 간의 사업 및 예산계획을 토대로 발전가능성을 평가한다.
- 4) 상기 1)내지 3)의 기준과 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종합 평가하여 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10) 전라남도**

**10-1.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5566호, 2022. 5. 19.]

**제3장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

**제12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범위)**

- ①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전문예술법인”이란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3.2.20, 2014.5.12., 2016.5.16., 2018. 2. 22.)
  1. 무대예술공연장 운영 법인·단체 (개정 2018. 2. 22.)
  2. 극단·뮤지컬단·관현악단·무용단·합창단·오페라단·실내악단·창극단·국악단·공연기획단 또는 이와 유사한 예술단을 운영하는 법인·단체 (개정 2018. 2. 22.)
  3. 전시행사의 개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 ② 법 제7조에 따른 “전문예술단체”란 제1항의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아닌 비영리단체를 말한다.(개정 2016.5.16.)

**제13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 ①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은 제12조의 법인·단체 가운데에서 도에 소재지를 둔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 신청서 및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2.)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개정 2016.5.16.)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16.5.16.)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 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16.5.16.)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을 말하며, 이하 제5호 및 제6호에서 같다)의 조직·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개정 2016.5.16.)
  5. 최근 2년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신설 2016.5.16.)



- 6. 최근 2년간의 공연·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전시시설의 운영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신설 2016.5.16.)
- 7.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함)(신설 2016.5.16.)
-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위원회는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대장에 지정사실을 기재하고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8. 2. 22.)

**제14조(전문예술법인·단체지정의 취소)**

제13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제3항을 준용한다.(후단 신설 2016.5.16.)

-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 2. 실태조사결과 예술활동 실적 저조 등 전문예술법인·단체로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개정 2016. 5.16.)

**제15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원·육성)**

- ① 도지사는 전문예술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6.5.16.)
- ② 공공 공연·전시시설운영자는 전문예술법인·단체와의 상주계약에 따라 공동 기획공연·전시를 조건으로 소관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11) 부산광역시

### 11-1.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6851호, 2023. 3. 1.]

**제5장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및 육성**

**제22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시장은 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2. 4. 4., 2015. 11. 4., 2021. 1. 13., 2021. 5. 26.>

**제23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원·육성)**

시장은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보조 및 공연·전시시설의 사용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0. 7. 7>  
<전문개정 2002. 3. 21>

### 11-2. 문화예술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4053호 2021. 6. 16.]

**제6조(사업실적 등의 보고)**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로 지정된 자는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과 수지결산현황을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2) 대구광역시

### 12-1.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문개정) 제5593호 2021. 7. 12.]

**제4장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

**제14조(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심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시장은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의2에 따른 시·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영 제4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제15조(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의 취소)**

시장은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을 취소할 경우 법 제7조제4항제2호 및 제3호를 따른다.

**제16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원)**

- ① 시장은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② 공공 공연·전시시설 운영자는 공연·전시의 기획에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참여시켜 기획할 수 있다.

## 13) 울산광역시

### 13-1.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문개정) 조례 제2646호, 2021. 12. 01.]

**제11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취소)**

- ① 시장은 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중에서 전문예술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예술법인 또는 단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는 등 지정 전문예술법인 또는 단체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예술법인 또는 단체의 새로운 지정은 1년 단위로 한다.

**제12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원·육성)**

-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기간은 최초 지정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

**13-2.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 제800호, 2017. 4. 27.]

**제2조(전문예술법인 또는 단체의 지정·취소)**

- ①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중에서 전문예술법인 또는 단체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예술법인·전문예술단체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울산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2.12.13., 2015.10.30.>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을 말하며, 이하 제5호 및 제6호에서 같다)의 조직·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5. 최근 2년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6. 최근 2년간의 공연·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전시시설의 운영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②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전문예술법인 또는 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에 필요한 심의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2-12-13>
- ③ 시장은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예술법인·전문예술단체 지정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전문예술법인·전문예술단체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2-12-13>
- ④ 시장은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 또는 단체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전문예술법인·전문예술단체 지정 취소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13>

[ 제목개정 2012-12-13 ]

**제3조(사업실적 보고)**

제2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 또는 단체는 해당 연도의 사업 실적 및 수치결산현황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2-13> [ 제목개정 2012-12-13 ]

**14) 경상북도**

**14-1.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 제4426호, 2020. 12. 17.]

**제6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

-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에 소재지를 둔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이하 "전문예술법인·단체"라 한다)로 지정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다.
- ②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라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의 취소)**

-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기획 또는 제작한 공연·전시 실적이 연 1회 미만인 경우
  3. 1년 이상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지 않거나 공연·전시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4. 전시·공연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술활동 실적을 제출하여 문화예술진흥사업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영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15) 경상남도**

**15-1.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5066호, 2021. 11. 4.]

**제3장 전문예술법인·단체**

**제17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 ①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 및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른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도 안에 소재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1. 조직·인력 운영의 적정성
  2. 재정 운영의 건전성
  3. 공연·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전시시설의 운영 실적
  4. 공연·전시된 작품의 예술적 완성도
  5.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지정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8조(지정사항의 변경)**

- ①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가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변경) 신청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지정변경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9조(지정의 취소)**

- ①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기획 또는 제작한 공연·전시 실적이 연 1회 미만인 경우
  3. 1년 이상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지 않거나, 공연·전시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4. 전시·공연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술활동 실적을 제출하여 제20조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0조(지원)**

- ① 도지사는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② 도에서 설치 및 운영하는 공연·전시 시설운영자는 전문예술 법인·단체가 공연 등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6) 제주특별자치도**

**16-1.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3350호, 2023. 3. 24.]

**제3장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

**제12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16.11.23.>
1.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목적으로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법인
  2.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이나 미술작품의 전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3. 제주자치도에 주된 소재지를 두고 있는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이나 미술작품의 전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중 “별표” 의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 ② 삭제 <2015.12.31.>
- ③ 그 밖에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4.14.>
- ④ 삭제 <2015.5.6.>
- [제목개정 2015.12.31.]

**제13조(전문예술법인·단체 지원 및 육성)**

- ① 도지사는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6.5., 2021.4.14.>
- ② 도지사는 지정된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의 공연이나 전시행사에 공공 공연장·전시장의 사용 편의를 제공하는 등 원활한 예술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6.5.>
- [제목개정 2013.6.5.]

**16-2. 별 표**

<개정 2015.12.31.>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기준(제12조 관련)**

**1. 신청기준**

- 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정상적인 활동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 나. 법인의 경우 예술단·공연장·미술관·전시관의 운영이 다수의 주된 목적사업 중 하나일 경우에는 독립채산이 가능하도록 직제 및 회계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 다. 공연분야의 경우 매년 1편 이상의 정기공연 또는 기획공연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예술단 또는 공연장간 합병이나 통합한 경우에는 종전의 예술단 또는 공연장 중 하나의 창단, 개관일 및 공연 실적을 적용할 수 있다.
- 라. 미술분야의 경우 매년 4건 이상의 정기적인 창작 또는 기획전시 프로그램을 개최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비엔날레, 트리엔날레의 경우는 총 개최실적이 2건 이상이어야 한다.)

**2. 지정 심사 기준**

**가. 공연분야**

- 1) 최근 2년간의 공연활동 실적(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 동안의 공연활동 실적을 말한다)에 대해 작품성, 전문성, 공연기획의 참신성, 관객 확보율, 공연이나 기획에 대한 반응 등 작품의 완성도와 단체운영의 전문성을 중심으로 심사한다.

- 2) 전문예술인·전문기획자·무대예술전문인 자격 소지자 등 전문 인력의 보유상태와 재정상태, 전용 시설의 보유상태 등 조직역량에 대하여 심사한다.
- 3) 관객이나 평론가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주요 작품의 보유상태·작품이나 단체의 수상경력, 해외 공연 참가 경력과 성과 등 공연장이나 예술단의 대외적 평가에 대하여 심사한다.
- 4) 도민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공익성을 고려한 기획 등 사회기여도를 심사한다.
- 5) 상기 1) 내지 4)의 기준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종합 심사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나. 미술분야**

- 1) 최근 2년간 창작지원 및 전시 활동실적(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 동안의 창작지원 및 전시 활동실적을 말한다)에 있어 독창성, 예술성, 참신성, 전문가 평가 및 일반 관람객 반응, 미술발전 기여도 등을 심층적으로 심사한다.
- 2) 창작 및 전시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 보유상태, 재정능력, 전용시설 보유상태 등 조직역량에 대하여 심사한다.
- 3) 해외진출 실적 등 경쟁력 있는 양질의 유·무형의 문화자원의 생산실적과 작가 발굴 등에 대하여 심사한다.
- 4) 도민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공익성을 고려한 기획 등 사회기여도를 심사한다.
- 5) 상기 1) 내지 4)의 기준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종합 심사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3. 재 지정시 평가 기준**

- 가. 제2호의 지정시 심사기준의 지속적 충족여부를 평가한다.
- 나. 지정 1차연도에 작성된 결산보고서를 토대로 재정상태의 건전성, 기부금 집행의 투명성 등에 대하여 평가한다.(외부감사 의견서나 세무회계 조정 의견서를 첨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 향후 2년간의 사업 및 예산계획을 토대로 발전가능성을 평가한다.
- 라. 상기 가 내지 다의 기준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종합 평가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16-3. 문화예술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 제773호, 2022. 9. 21.]

**제2장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

**제2조(지정절차)**

- ①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를 매년 9월부터 10월까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0.>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도지사는 매년 11월까지 조례의 별표 지정요건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삭제 <2020.5.20.>

**17) 세종특별자치시**

**17-1.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836호, 2021. 12. 10.]

**제2장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

**제2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진흥법」(이하 이 조례에서 “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 ② 시장은 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별도의 심사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제3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원·육성)**

-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②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소유 공연·전시시설 운영자는 전문예술법인·단체와의 공동 기획 공연·전시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소관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